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9-53 호

2019년 11월 7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3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4호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5호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6호	전라남도 소재 ·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7호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8호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9호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60호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61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62호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63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64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65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훈 령

전라남도 훈령 제1425호	전라남도 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

◆ 예 규

전라남도 예규 제1065호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	--------------------------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68호	나주 영산강에코트레일 기반시설사업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1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2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3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4호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5호	2019년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8차)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6호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해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81호	장성 맥호지구 신규마을조성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37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56호	도로 사용 폐지 공고

◆ 시군행정

목포시 고시 제2019-196호	목포 도시계획시설(고하도유원지/주차장 화장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9-197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34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목포시 공고 제2019-151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고하도유원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여수시 고시 제2019-32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굴전 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순천시 고시 제2019-205호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고시 제2019-207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로,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공고 제2019-1998호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광양시 고시 제2019-281호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8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19-282호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장 제82호)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구례군 공고 제2019-661호	구례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구례군 공고 제2019-663호	구례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보성군 고시 제2019-106호	보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진군 고시 제2019-173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및 토지 세목 고시
해남군 고시 제2019-153호	해남 화합농협 주유소 잔입도로 살충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평군 공고 제2019-1121호	나산면 초포리 진입도로 개선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함평군 공고 제2019-1127호	함평 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진도군 고시 제2019-51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82호	신안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편입면적 정정)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83호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84호	2025년 신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유관기관

광양청 공고 제2019-3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등 공포 공고
광양청 규정 제24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청 규정 제24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청 고시 제2019-1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해룡산업단지(2단계) 실시계획(변경)승인 정정 고시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53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전라남도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전라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 시 하는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5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당직근무)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3일의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유·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 시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⑤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⑥ 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6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사용하려는 날 근

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6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3회

⑫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휴가기간의 초과)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의 방법 및 절차(제2조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전라남도지사 앞에서 선서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에 선서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다. 선서문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기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54호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도지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도지사가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자격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④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도지사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55호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 를 “따른” 으로, “관리기준” 을 “세부관리기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연막소독” 을 “연막 소독” 으로, “사람은” 을 “자는” 으로, “사유” 를 “목적” 으로, “소방본부장” 을 “전라남도소방본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장소는” 을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변지역” 을 “주변 지역”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논과 밭 주변 지역(「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과 별표 2 및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2조 관련)

설 비 명	세 부 관 리 기 준
1. 불티가 생기는 설비	가. 불티가 생기는 설비라 함은 공정 및 작업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나.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2)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3)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라. 불티가 생기는 장소에서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기	가. 용접 절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작업장의 관리자는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용접 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2) 주위의 인화성폭발성 물질의 제거 3) 용접절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4)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5)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7)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제3조에 따른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20만원

불 피움·연막 소독의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예정일시					
장소(구간)					
소요시간					
연소물품 및 수량					
목적(사유)					
신고방법	방문(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기타()				
특기사항					
※ 접 수			※ 경 유		
접수일시	접수자(부서)	처리사항	경유일시	경유자(부서)	처리사항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소방본부장(〇〇소방서장) 귀하					
〈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신고방법이 구두 또는 전화인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56호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소재부품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소재·부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소재·부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
3. 도 내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소재전문기관 육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소재·부품산업의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소재전문기관의 기술 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부품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부품전문기업 또는 소재전문기관 중 현재 운영 중인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도에 소재하는 기업
2. 도에서 창업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
3. 「소재부품기업법」 제5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2. 그 밖에 소재·부품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재·부품 관련 업무 실장·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3.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재·부품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57호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지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사항 전부를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청구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한도) 도지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도지사는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청구인에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전라남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58호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단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례에 따라 처리”를 “조례를 적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을“(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지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4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시 영향력 행사 금지) 의원은 의회,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전라남도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전라남도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남도의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

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당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를 “별지 제7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서면으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초과하는 사례금”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에” 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 을 “제8항” 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반환 등) ① 의장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5호” 를 “별지 제11호” 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금전 거래 등 제한)” 을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 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13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중전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중전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중전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중전의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중전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중전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중전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중전의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중전의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중전의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중전의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

1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시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회,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라남도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축수산물(이하 “농축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축수산물가공품(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 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직무 관련 업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회피 원인)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안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 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안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견서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안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 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안 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제14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이
 고
 고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제7항, 제20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및	받은일시				
처리내역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철용품))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 전라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제20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6호서식] (제20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59호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 일 경우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7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3항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활동기간 내에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서가 첨부된 연장안과 중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60호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남도교육감”을 “전라남도교육감 및 다른 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61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 교육감
2. 제2관서: 교육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철거비용은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교육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2항제3호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을 “영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9조제10호”를 “영 제9조제1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6호(중전의 제5호) 중 “필요한” 을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
2. 건물
3. 기계기구
4. 선박
5. 임목 · 죽
6. 무체재산
7.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8. 특허권 및 기타관리
9. 주식 및 출자에 따른 관리 등
10. 부동산 신탁수익권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9조제3항제4호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이란 각 호와 같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공용 · 공공용” 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 공공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을 “벤처기업집적시설” 로, “설치에” 를 “설치와 그 운영에” 로,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 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 운영자” 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이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하여 토석채취료를 징수할 때에는 토석채취료의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원석의 시가를” 을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료의 예정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가격평정조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8조에 따라서 건물의 대부료 산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62호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의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섬지역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섬지역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섬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② 섬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섬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섬지역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3. 섬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4. 교직원의 후생 복지 및 편의 증진
5. 그 밖에 섬지역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섬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섬지역 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육 기재를 제공하고 교직원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섬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섬지역(제3조제2항 관련)

시·군	지 역
목포시	달리도, 고하도, 울도
여수시	대경도, 묘도, 금오도, 안도, 연도, 대두라도, 화태도, 백야도, 월호도, 개도, 대여자도, 거문도(고도), 서도, 동도, 손죽도
광양시	태인도
고흥군	소록도, 시산도, 거금도, 외나로도, 우도, 내나로도
보성군	장도
해남군	어불도
영광군	상낙월도, 안마도
완도군	평일도(금일도), 넓도, 노화도, 서넙도, 신지도, 고금도, 조약도(약산도), 대모도, 청산도, 소안도, 금당도, 보길도, 예작도, 생일도
진도군	금호도, 접도, 모도, 가시도, 관사도, 대마도, 서거차도, 하조도
신안군	병풍도, 소악도, 임자도, 자은도, 비금도, 도초도, 대흑산도(흑산도), 장도(대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흥도, 하태도, 가거도, 하의도, 상하태도, 장산도, 안좌도, 자라도, 팔금도, 암태도, 추포도, 증도

비고 : 여수시 돌산읍, 광양시 금호도, 완도·진도 본섬, 신안군 압해도·지도는 제외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63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숲을 말한다.
2. “학교숲 조성”이란 학교숲에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 나. 의자, 간이 쉼터,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의 설치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식물 개발·보급·재배
3. 학교숲을 활용한 치유·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학교숲 개방 등 관리
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및 관리 지침)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이 포함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1.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식물 식재로 교과 과정과 연계

2. 생물다양성 보전 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교육

3. 학생과 주민에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 제공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을 검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숲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학교숲의 교육과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64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활동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학습하며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공공성·공동체성·자발성과 참여자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으로 교육자치 기반 구축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교육과 제10조의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전라남도 및 시·군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2세 미만은 아동으로 만 12세 이상은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5.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학교를 말한다.
6.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7. “교육거버넌스”란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청, 교육지원청과 시·군, 학교, 학부모, 교사, 그 밖에 도내에 소재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재정 분담을 협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과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

2. 협력체계 구축

3. 재원 조달

4. 사업 평가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 및 시장·군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교육 및 연수

2. 마을학교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협동조합 지원

5. 학습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지원

6.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7. 마을교육공동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8. 교육거버넌스 구성 및 지원

9.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역량 강화

2.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위원회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해당 시·군과 자율적인 협약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상담 지원

6. 마을 주민 교육, 조직 및 정보망 구축·운영 지원

7.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교육거버넌스 구축·운영

9.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

10.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연계·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과 협의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이 설치하고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기구와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3. 교육협동조합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4.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5.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협동조합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협동조합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훈련, 상담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 조성 사업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관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제18조(학교시설 사용료 면제) 학교의 장은 마을학교 운영자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1. 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65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중학교”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내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전입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훈령 제1425호

전라남도 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남도 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주”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휴일을 포함한 7일(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요일을 다르게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한다.

제5조제8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2부
4. 최종학력증명서(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신원진술서(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부

제8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를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근로일 및 휴일)”을 “(근무일 및 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일”을 “근무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일”을 “근무일”로,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유급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일요일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④ 공무원이 제2항의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휴직기간 연장서”를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휴직연장신청서”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거나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육아휴직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휴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7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사무분장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사무분장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부서의 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안)(제8조제1항 관련)

○○○의 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휴대전화)			

1. 수습

○ 최초 근무부서에서 00년 00월 00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을 한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수습결과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근로계약기간 : 수습 후 계속 근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00년 00월 00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체결한 것으로 한다.

3. 근무장소 및 직종

○ 근무장소 : 전라남도 일원(최초 근무부서 : 농업기술원)

○ 직 종 : (단순노무, 비서요원, 사업보조원, 현업요원, 관리요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 및 직종이 바뀔 수 있음.

4.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9시부터 18시분까지(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다만, 근무부서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부서 및 근무장소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한다.

- “사용자”는 사전에 휴일에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특정한 근로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

6. 휴 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임 금

- 임금은 기본급, 수당, 급식비,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한다.
- 임금은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임금한다.

8. 근무성적 평정

- “사용자”는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보·교육·특별승급·표창 등 인사관리 등에 활용한다.

9. 직종 및 담당사무 조정

- “사용자”는 행정수요 감소, 직제개편 등으로 “근로자”의 직종 및 담당사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절차 이행 후 조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할 수 있다.
- 직종 및 담당사무가 조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10.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 관련 법규, 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주소 :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기관명 : 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사무처)
대표자 :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

(인)

(근로자)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9호서식]

휴직신청서(제22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 소 속 :
- 성 명 :
- 휴직종류 :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사간병휴직
- 휴직사유 : (첫째)자녀 양육, 父 간병
- 휴직기간 : 0000년00월00일 ~ 0000년 00월00일
- ※ 휴직종류 : 육아휴직(규정 47조), 질병휴직(규정 22조1호), 병역휴직(규정 22조2호),
형사휴직(규정 22조3호), 가사간병휴직(규정 22조4호)

본인은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직하고자 합니다.

실과소원단장	공 람

0000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증명서류

[별지 제9호의2서식]

휴직연장신청서(제22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 관련)

- 소 속 :
- 성 명 :
- 휴직종류 :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사간병휴직
- 휴직사유 : (첫째)자녀 양육, 父 간병
- (당초)휴직기간 : 0000년00월00일 ~ 0000년 00월00일
- (연장)휴직기간 : 0000년00월00일 ~ 0000년 00월00일

본인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직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실과소원단장	공 람

0000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증명서류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예규 제1065호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술용역”을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어장정화·정비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장정화·정비용역”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등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평가기준 :”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장정화·정비용역 평가기준: 별표 2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평가기준 :”을 각각 “평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7조제1항 중 “결정한다”를 “결정한다(다만, 시설분야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영 제92조”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기준의 폐지) 「전라남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7. 7. 13.)」 및 「전라남도 어장정화사업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2232호, 2011. 07. 20.」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13	-
	2. 경영상태	26	19
	3. 기술능력	5	5
	4. 지역업체 참여도	4	4
	5. 신인도	+4.5 ~ △7	+4.5 ~ △7
	소 계	48	28
II. 입찰가격		50	70
I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2	2
합 계		100	100

주 1) 각 평가의 배점 및 평점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이하 [별표 1]에서 [별표6]까지 같다)

2. 이행실적(5억원 이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또는 규모 기준]	동등 이상 용역	A. 100% 이상	13.0
		B. 70% 이상-100% 미만	11.3
		C. 40% 이상-70% 미만	9.6
		D. 10% 이상-40% 미만	7.8

주 1) 이행실적은 10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동등 이상 용역에 대한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6	19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6	19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6	19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6	19
BB+, BB°	B+	①의 BB+, BB° 에 준하는 등급	25	19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4	1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3	17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2	16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 4)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40% 미만	13 12 10 8	9.5 8.5 6.5 5.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40% 미만	13 12 10 8	9.5 8.5 6.5 5.5

- 주 1) 업종평균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4 사업시설 및 조경 서비스업” 을 적용한다. 공고에 별도 표기하는 경우 공고에 표기된 업종 평균율을 따른다.
- 2)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4.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가 기준	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3인 이상의 기사	5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2인 이상 기능사	4.3
	C. 1인 이상의 기능사	3.6
	D. 미보유	3

주 1) 청소, 시설물경비비용역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각각 비율을 취득점수에 곱하여 산출 후 합으로 평가한다.

5. 지역참여도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소재한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40% 미만·30% 이상	30% 미만·20% 이상	20% 미만
점수	4점	3점	2점	0점

주 1) 지역제한 경쟁입찰 또는 지역제한이 아닌 경쟁입찰로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2)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다만, 해당 자격 보유자가 10인에 미달하여 인접 시·도에 소재한 업체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보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 분	평 점 산 식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5억원 이상	$\text{평점} = 50 - 20 \times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5억원 미만	$\text{평점} = 70 - 20 \times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주 1) |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평 점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서 제출	1	0
계	2	0

주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시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약속을 말한다.

[별표 2]

어장정화 · 정비용역 적격심사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배점)	평점
수행능력 (70점)	시행 능력 (20점)	1.기술인력 (5점)	*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적합 : 만점, 부적합 : 0점)	5점	
		2.선박 (10점)		10점	
		3.시설·장비 (5점)		5점	
	이행 실적 (20점)	최근 5년내 실적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A. 100%이상 20.0점 B. 75%이상 ~ 100%미만 18.0점 C. 50%이상 ~ 75%미만 16.0점 D. 25%이상 ~ 50%미만 14.0점 E. 0%이상 ~ 25%미만 12.0점	20점	
	경영 상태 (30점)	1.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 100%미만 15.0점 B. 100%이상 ~ 200%미만 13.9점 C. 200%이상 ~ 300%미만 12.8점 D. 300%이상 11.7점	15점	
		2.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이상 15.0점 B. 75%이상 ~ 100%미만 13.9점 C. 50%이상 ~ 75%미만 12.8점 D. 50%미만 11.7점	15점	
	○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3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text{ 입찰가격} \\ * \text{평점} = 30 - \left \frac{(\text{---} - \text{---})}{100} \right \times 100 \\ 100 \text{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30점	
계	100점			100점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8.9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7.8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6.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5.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3.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2.3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1.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0.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8.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	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배점)	평점
수행능력 (50점)	시행 능력 (15점)	1.기술인력 (4점)	*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적합 : 만점, 부적합 : 0점)	4점	
		2.선박 (7점)		7점	
		3.시설·장비 (4점)		4점	
	이행 실적 (15점)	최근 5년내 실적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A. 100%이상 15.0점 B. 75%이상 ~ 100%미만 13.5점 C. 50%이상 ~ 75%미만 12.0점 D. 25%이상 ~ 50%미만 10.5점 E. 0%이상 ~ 25%미만 9.0점	15점	
	경영 상태 (20점)	1.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A. 100%미만 10.0점 B. 100%이상 ~ 200%미만 9.3점 C. 200%이상 ~ 300%미만 8.8점 D. 300%이상 8.0점	10점	
		2.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A. 100%이상 10.0점 B. 75%이상 ~ 100%미만 9.3점 C. 50%이상 ~ 75%미만 8.8점 D. 50%미만 8.0점	10점	
	○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입찰가격 (50점)	입찰가격(5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quad \text{입찰가격}$ $* \text{평점} = 50 - 2 \times \left \left(\frac{\text{——} - \text{——}}{\text{——}} \right) \times 100 \right $ $100 \quad \text{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0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50점	
계	100점			100점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9.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8.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7.9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7.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6.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1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2.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	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배점)	평점
수행능력 (30점)	시행 능력 (7점)	1.기술인력 (2점)	*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적합 : 만점, 부적합 : 0점)	2점	
		2.선박 (3점)		3점	
		3.시설·장비 (2점)		2점	
	이행 실적 (8점)	최근 5년내 실적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A. 100%이상 8.0점 B. 75%이상 ~ 100%미만 6.9점 C. 50%이상 ~ 75%미만 5.8점 D. 25%이상 ~ 50%미만 4.7점 E. 0%이상 ~ 25%미만 3.6점	8점	
	경영 상태 (15점)	1.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A. 100%미만 7.5점 B. 100%이상 ~ 200%미만 7.0점 C. 200%이상 ~ 300%미만 6.4점 D. 300%이상 5.9점	7.5점	
		2.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A. 100%이상 7.5점 B. 75%이상 ~ 100%미만 7.0점 C. 50%이상 ~ 75%미만 6.4점 D. 50%미만 5.9점	7.5점	
	○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7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text{평점} = 70 - 4 \times \left \left(\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 \right) \right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70점	
계	100점			100점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4.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4.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3.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1.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1.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0.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0.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9.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	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 (배점)	평점
수행능력 (10점)	시행 능력 (5점)	1.기술인력 (1점)	*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적합 : 만점, 부적합 : 0점)	1점	
		2.선박 (3점)		3점	
		3.시설·장비 (1점)		1점	
	경영 상태 (5점)	1.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A. 100%미만 2.5점 B. 100%이상 ~ 200%미만 2.1점 C. 200%이상 ~ 300%미만 1.8점 D. 300%이상 1.5점	2.5점	
		2.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A. 100%미만 2.5점 B. 100%이상 ~ 200%미만 2.1점 C. 200%이상 ~ 300%미만 1.8점 D. 300%이상 1.5점	2.5점	
	○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특별신인도(+2)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 합계액이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 2점	+2점	
입찰가격 (90점)	입찰가격(9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90-20 × (—— -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0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90점	
계	100점			100점	

주 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10점)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7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 4)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가.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 가.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나.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 다.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 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
-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별표 3]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I. 해당 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5	-
	2. 경영상태	30	26
	3. 지역업체 참여도	4	4
	4. 기술능력	1	-
	5. 신인도	+8.5~△7	+8.5~△7
	소 계	40	30
II. 입찰가격		60	70
합 계		100	100

2. 이행실적(5억원 이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5 4 3 2

주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	26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	26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0	26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6
BB+, BB°	B+	①의 BB+, BB° 에 준하는 등급	29	2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	2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2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4	21

주 1) [별표 1] “3-가” 의 “주 1)~주4)” 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15	13
	B. 80% 이상~120% 미만	14	12
	C. 40% 이상~80% 미만	12	10
	D. 40% 미만	10	8
나. 최근년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15	13
	B. 80% 이상~120% 미만	14	12
	C. 40% 이상~80% 미만	12	10
	D. 40% 미만	10	8

주 1) 업종평균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 중 평가업종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4. 기술능력(5억원 이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또는 3인 이상의 기사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또는 2인 이상의 기능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주 1)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동일인이 20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참여도

○ [별표 1]의 “5.”에 따라 평가한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 분	평 점 산 식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5억원 이상	평점 = 60 - 2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5억원 미만	평점 = 70 - 2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주 1) |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34	-	-
	2.경영상태	28	16	10
	3.기술능력	4	4	-
	4.지역업체 참여도	4	-	-
	5.신인도	+7.5~△10	+7.5~△10	+7.5~△10
	소 계	70	20	10
II. 입찰가격		30	80	90
합 계		100	100	100

2. 이행실적(5억원 이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당해용역 규모대비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비율 [금액 또는 물량 기준]	동등이상 용역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34.0 29.5 25.0 20.4

주 1) 동등 이상 용역에 대한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8	16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8	16	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8	16	1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8	16	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7	16	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6	15	9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5	14	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2	12	5

주 1) [별표 1] “3-가”의 “주 1)~주4)”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14	8	5.0
	B. 80% 이상~120% 미만	13	7.5	4.3
	C. 40% 이상~80% 미만	11	7	3.6
	D. 40% 미만	9	6.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14	8	5.0
	B. 80% 이상~120% 미만	13	7.5	4.3
	C. 40% 이상~80% 미만	11	7	3.6
	D. 40% 미만	9	6.5	3.0

주 1) 업종평균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을 적용한다.
공고에 별도 표기하는 경우 공고에 표기된 업종 평균율을 따른다.

2)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3. 기술능력(1억원 이상)

심 사 항 목		평 점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3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0
나. 기술보유 상황	A. 일일운반처리 기준이상 운반 장비 소유	1
	B. 일일운반처리 기준미만 운반 장비 소유	0

주 1)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장비소유는 공고일 현재 허가 된 소유차량의 최대 적재량으로 평가한다.(운반하지 않는 경우는 만점 처리한다.) 예시 처리예정물량 10톤, 용역일수 3일 10/3=3.33333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처리기준 물량은 3.34톤 운반차량은 일일 1회 운행을 기준(해당 발주기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운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으로 평가한다.

4. 입찰가격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 분	평 점 산 식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5억원 이상	평점 = 30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점 = 80 - 20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1억원 미만	평점 = 90 - 20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주 1) | | 는 절대값 표시임.

2)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지역참여도(5억원 이상)

○ [별표 1]의 “5.”에 따라 평가한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I. 당해 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16	-
	2. 경영상태	10	10
	3. 기술능력	10	10
	4. 지역업체 참여도	4	-
	5. 신인도	+7.5~△7	+7.5~△7
	소 계	40	20
II. 입찰가격		60	80
합 계		100	100

2. 이행실적(5억원 이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또는 물량기준]	동등 이상 용역	A. 100% 이상	16.0
		B. 70% 이상~100% 미만	13.9
		C. 40% 이상~70% 미만	11.8
		D. 10% 이상~40% 미만	9.6

주 1) [별표 4] “2.”의 “주 1)~주2)”에 따른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 BB°	B+	①의 BB+, BB° 에 준하는 등급	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5

주 1) [별표 1] “3-가” 의 “주 1) ~ 주4)” 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5.0
	B. 80% 이상~120% 미만	4.3
	C. 40% 이상~80% 미만	3.6
	D. 40% 미만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5.0
	B. 80% 이상~120% 미만	4.3
	C. 40% 이상~80% 미만	3.6
	D. 40% 미만	3.0

주 1) 업종평균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중 “H492 육상여객운송업” 을 적용한다. 공고에 별도 표기하는 경우 공고에 표기된 업종 평균을 따른다.

2)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4.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장비보유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10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

주 1) 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4조제1항에 정한 처량이나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입류(가입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류(가입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된 등록원부 등 입 증서류를 제출해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지역참여도

○ [별표 1]의 “5.” 에 따라 평가한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 분	평 점 산 식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5억원 이상	평점 = 60 - 2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5억원 미만	평점 = 80 - 2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주 1) | | 는 절대값 표시임.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28	20	10
	2. 수행능력	20	18	8
	3. 경영상태	20	10	10
	4. 신인도	+7.5~△10	+7.5~△10	+7.5~△10
	소 계	68	48	28
II. 입찰가격		30	50	70
I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2	2	2
합 계		100	100	100
결격사유	부실수행	△15	△10	△5
	재무위험	△15	△10	△5

2.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 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최근 5년내 당해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당해용역(생활폐기물) 및 유사용역(생활폐기물 외 및 청소용역업) 이행실적 -당해 용역금액 대비	100% 이상	28.0	20.0	10.0
		75% 이상~100% 미만	26.0	19.0	9.0
		50% 이상~ 75% 미만	24.0	18.0	8.0
		25% 이상~ 50% 미만	22.0	17.0	7.0
		25% 미만	20.0	16.0	6.0

주 1) 최근 5년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당해용역) 이행실적과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유사용역) 이행실적(청소용역업 이행 실적 포함)의 합으로 계산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 및 청소용역업 이행실적은 실 이행실적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실적만을 인정한다.

2)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이행실적은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3. 수행능력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 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수집운반 차량확보 현 황	적정장비(압축, 압착, 밀폐식, 진개, 압롤, 롤온, 덤프 등 청소차) -(보유대수/최소한의 필요대수)×100	100% 이상 50% 이상~100% 미만 50% 미만	10.0 8.0 6.0	9.0 8.0 7.0	4.0 3.5 3.0
인 력 보유현황	적정인력 -(보유인력/최소한의 필요인력)×100	100% 이상 50% 이상~100% 미만 50% 미만	10.0 8.0 6.0	9.0 8.0 7.0	4.0 3.5 3.0

- 주 1) 적정장비 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해당 사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대수 대비 보유대수를 말한다.
- 2) 적정인력은 해당 사군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인력 대비 보유인력을 말하며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총원으로 한다.
- 3) 적정장비 및 적정인력은 해당 영역의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최소한의 장비 및 인력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4.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0	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	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	9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	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7	7

- 주 1) [별표 1] “3-가”의 “주 1)~주4)”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 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재무상태 건 전 성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100	100% 미만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10.0 8.0 6.0	5.0 4.0 3.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00% 이상 75% 이상-100% 미만 75% 미만	10.0 8.0 6.0	5.0 4.0 3.0
자산규모	[재산감정평가액/(원가 계산총액/12)]×100	100% 이상 75% 이상-100% 미만 75% 미만	20.0 16.0 12.0	10.0 8.0 6.0

- 주 1) 재무상태 판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로 한다.
- 2) 기준업종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 3)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 것에 의한다.
- 4) 원가계산 총액은 해당 사군의 당해용역 원가계산 결과를 말한다.
- 5) 자산규모는 법인의 경우 법안의 재산감정평가액을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재산감정평가액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자가 감정한 평가서를 말한다.
- 6) 재무상태 평가는 제출한 자료중 재무상태 건전성과 자산규모중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7)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5.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6. 결격사유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 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결격사유	부실수행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 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10	△5
	재무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 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기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0	△5

7. 입찰가격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분	평점 산식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함	30억원 이상	평점 = 30 - 60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점 = 50 - 40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10억원 미만	평점 = 70 - 20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주 1) | | 는 절대값 표시임.
-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3)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하며,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하고,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8.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 1]의 “8.” 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

I.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10년 이상 1.0 (2)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3) 3년이상 ~ 5년 미만 0.5 (4) 3년 미만 0.25	
나.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다. 사회적 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1.0 (2)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경제기업 0.5	
라. 중소기업 및 신기술특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 소기업·소상공인 1.0 - 신기술특허(정보통신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0	
마. 지연배상금 - 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30일 이상 △2.0 (2) 지연일수 15일 이상~30일 미만 △1.5 (2) 지연일수 15일 미만 △1.0	
바.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자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3.0 (2) 행정처분을 받은 자 △1.0	

심 사 항 목	평점(점)
사. 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아. 고용창출(시설분야 영역은 제외) -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에 따라 (가) 5인 이상 (나) 3 ~ 5인 (다) 1 ~ 2인 -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1) 6인 이상 (2) 3 ~ 5인 (3) 1 ~ 2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0.5 1.5 1.0 0.5
자. 청년 고용창출(정보통신영역에 한함) -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차.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자(폐기물처리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영역에 한함)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II. 평가기준

1. 평가기준 총괄

-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사” 항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3) 신인도 평가점수는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가. 여성기업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2)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사회적경제기업

- 1)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2)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라. 중소기업

- 1)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 4) 신기술·특허는 정보통신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해당 용역이행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마. 자연배상금

-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자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자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자연배상금 부과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자

- 1)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사. 부정당업자 제재

-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아. 고용창출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 》

-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에 따라 평가한다.

-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dots = 2.9703\%$

※ 평균고용인원 계산결과와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 》

-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 1~2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 2)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 3)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청년 고용창출

-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종업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times (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4년도 공고시) = 2014-14 = 2000, 2014-33=1981 따라서 1981년생부터 2000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다.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차. 폐기물 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 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구역

관리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구분	청소(), 경비(), 시설관리(), 정보통신(), 폐기물(), 기타()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FAX번호	
성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 구역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특별 신인도)			
	소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합계				
결격사유				
총평점		100		

[별지 제3호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내용			비고
				이행기간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서류,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별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예정가격결정비율(시정율)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청소용역의 경우만 작성)

- 예 ()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 고시 제2019-368호

나주 영산강에코트레일 기반시설사업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 영산강에코트레일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나주시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I.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나주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2.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면적, 사업시행 기간

○ 사업의 명칭 : 나주 영산강에코트레일 기반시설사업

○ 사업의 목적 :

- 영산강변에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여 영산강의 수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
- 현무암 재질의 절벽을 활용한 공원조성으로 경제적 가치를 다한 폐석산을 휴식 및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내 공원으로 조성

○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나주 영산강에코트레일 기반시설사업	이창동, 영산동, 용산동 일원	35,301㎡	

○ 사업의 시행기간 : 2015년 ~ 2020년(6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 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자금투입계획

부문별 사업	계 (백만원)	1단계				2단계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나주 영산강에코트레일 기반시설사업	5,635	-	-	215	1,000	3,212	1,208	-	

○ 재원조달계획

부문별 사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나주 영산강에코트레일 기반시설사업	5,635	5,635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순번	소재지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비고
	위 치	지 번		지적	편입		
1	나주시 영산동	314-1	천	3,864	15	국토교통부	
2	나주시 이창동	688-13	도	4,822	82	국토교통부	
3		602-5	제	23	12	국토교통부	
4		630-9	제	23	23	국토교통부	
5		602-1	제	243	4	국토교통부	
6		630-7	제	30	5	국토교통부	
7		630-2	제	21	21	국토교통부	
8		630-13	제	190	190	국토교통부	
9		630-8	제	1,304	115	국토교통부	
10		629-1	천	91	82	국토교통부	
11		629-2	유	349	349	국토교통부	
12		626-9	천	4,550	1,359	국토교통부	
13		626-12	제	444	444	국토교통부	
14		626-11	제	1,617	14	국토교통부	
15		621-5	천	8,168	2,312	국토교통부	
16		660-1	천	5	5	국토교통부	
17		661-1	답	823	347	국토교통부	
18		662-2	천	977	236	국토교통부	
19		675	답	302	255	국토교통부	
20		675-2	답	2,910	434	국토교통부	
21		675-4	답	44	44	국토교통부	
22		674-1	구	132	12	국토교통부	
23		662-5	천	806	398	국토교통부	
24		671-3	답	67	56	국토교통부	
25		671-2	구	18	13	국토교통부	
26		672-13	천	1,904	91	국토교통부	

순번	소재지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비고
	위 치	지 번		지적	편입		
27		698	도	2,517	4	국토교통부	
28		701	구	1,397	41	농림축산식품부	
계				37,641	6,963		

- 기타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건설도시과(061-286-7363), 나주시 도시과(061-339-89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1. 허가번호 : 2019 - 제 1 호
2. 허가연월일 : 2019. 10. 29.
3. 점·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데크) 설치
4. 점·사용의 장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3-22번지 지선
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204.0㎡
 - 기간 : 2019. 10. 29 ~ 2029. 10. 28(10년)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명 : 에스에이프로젝트제일차(주)
 -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52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1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 인가내용

사 업 의 목 적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시 설 의 명 칭		풍양 매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시행자	성 명	고흥군수	
	주 소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사업시행지	위 치	고흥군 풍양면 매곡리 638-29 일원	
	면 적	428㎡	
사 업 내 용		처리시설 50㎡/일, 오수관로 1.523km	
처 리 공 법		JASSFR공법	
처리구역 및 배수구역		처리구역	배수구역
		14ha	14ha
사업시행기간		2018년 ~ 2021년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061-830-566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시설명	토지 소재지		지목	대장상의 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군 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공 공 하수도	고흥군 풍양면 매곡리	638-29	학	428	428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2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 인가내용

사 업 의 목 적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시 설 의 명 칭		동강 원매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시행자	성 명	고흥군수	
	주 소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사업시행지	위 치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414-19 일원	
	면 적	380㎡	
사 업 내 용		처리시설 70㎡/일, 오수관로 3.107km	
처 리 공 법		JASSFR공법	
처리구역 및 배수구역		처리구역	배수구역
		47ha	47ha
사업시행기간		2018년 ~ 2021년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061-830-566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시설명	토지 소재지		지목	대장상의 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군 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공 공 하수도	고흥군 풍양면 매곡리	계		798	380		
		1310-1	도	282	95		전라남도 (교육감)
		414-19	대	357	210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344-6	원매곡마을회
		194-3	답	159	75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414	최 만 석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3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 공공하수도 설치내역

시 설 명	신도심 노후하수관로					
사업시행자	순천시장					
사업목적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방류하천 수질 오염 방지					
위 치	순천시 왕조1동 일원					
사업내용	오수관로 교체 및 보수 4,848km					
처리방식	순천공공하수처리장(130,000m ³ /일) 유입처리					
처리구역면적	1,113.7ha					
사업시행기간	2018년 ~ 2021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해 당	없 음	주 소	성명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 순천시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61-749-6505)

전남도 고시 제2019-374호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치유의 숲 조성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1. 명 칭 :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2. 위 치 :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산37-1일원
3. 면 적 : 1,002,870㎡
4. 사업기간 : 2013 ~ 2020년
5. 연도별 투자계획

합 계	2013-2015년	2016-2017년	2018년	2019-2020년
280억원	18억원	139억원	98억원	25억원

6. 치유의 숲 시설계획서

시 설 명	규 모	단위	수 량			비고
			기승인	금회변경	증 감	
합 계			15종	34종	19	
○ 산림치유시설			7종	13종	6종	
- Air사위장	320㎡	개소	1	1	-	
- 그루터기명상원	77㎡	개소	1	1	-	
- 체력단련장	60㎡	개소	1	1	-	
- 테라피센터	4,900㎡	동	2	2	-	
- 빛의 뜰(일광욕장)	3,856㎡	개소	1	1	-	
- 야외데크	356㎡	개소	-	1	1	신설
- 숲속전망대	82㎡	개소	-	1	1	신설
- 명상쉼터	645㎡	동	5	5	-	
- 명상데크 (1,2,3,4)	800㎡	개소	-	4	4	신설
- 치유의 숲길	B=1.5	km	8.3	8.0	△0.3	
- 풍욕장	62㎡	개소	-	1	1	신설
- 숲속종합체험시설	7,559㎡	개소	-	1	1	신설
- 체험시설교육장	282㎡	개소	-	1	1	신설

시 설 명	규 모	단위	수 량			비고
			기승인	금회변경	증 감	
○ 편익시설			6종	13종	7종	
- 숲속쉼터	120㎡	개소	1	1	-	
- 광장(1,2)	551㎡	개소	-	2	2	신설
- 주차장(1,2,3)	2,571㎡	개소	3	3	-	
- 주차장(4,5,6,7)	3,223㎡	개소	-	4	4	신규
- 연결로(1,2,3)	824㎡	개소	3	3	-	
- 진입도로	3,337㎡	개소	1	1	-	
- 목교	136㎡	개소	1	1	-	
- 포토존	130㎡	개소	-	1	1	신설
- 안내시설	225mm×400mm×275mm	개	36	55	19	
- 파고라	325mm×1,130mm×350mm	개	-	3	3	신설
- 먼지털이기	195mm×315mm×240mm	개	-	1	1	신설
- 평상	200mm×250mm×43mm	개	-	20	20	신설
- 그루터기 벤치	670mm×750mm×30mm	개	-	5	5	신설
○ 위생시설			1종	3종	2종	
- 화장실 (1,2,3)	116㎡	개소	-	3	3	신설
- 심정	119㎡	개소	1	1	-	
- 오수처리정화시설	-	개소	-	1	1	신설
○ 안전시설			1종	5종	4종	
- 안전헬스	-	식	1	1	-	
- 전기·통신·소방시설	-	식	-	1	1	신설
- 방송음향시설	-	식	-	1	1	신설
- 화재경보기	-	식	-	1	1	신설
- 시방댐 2개소	-	식	-	1	1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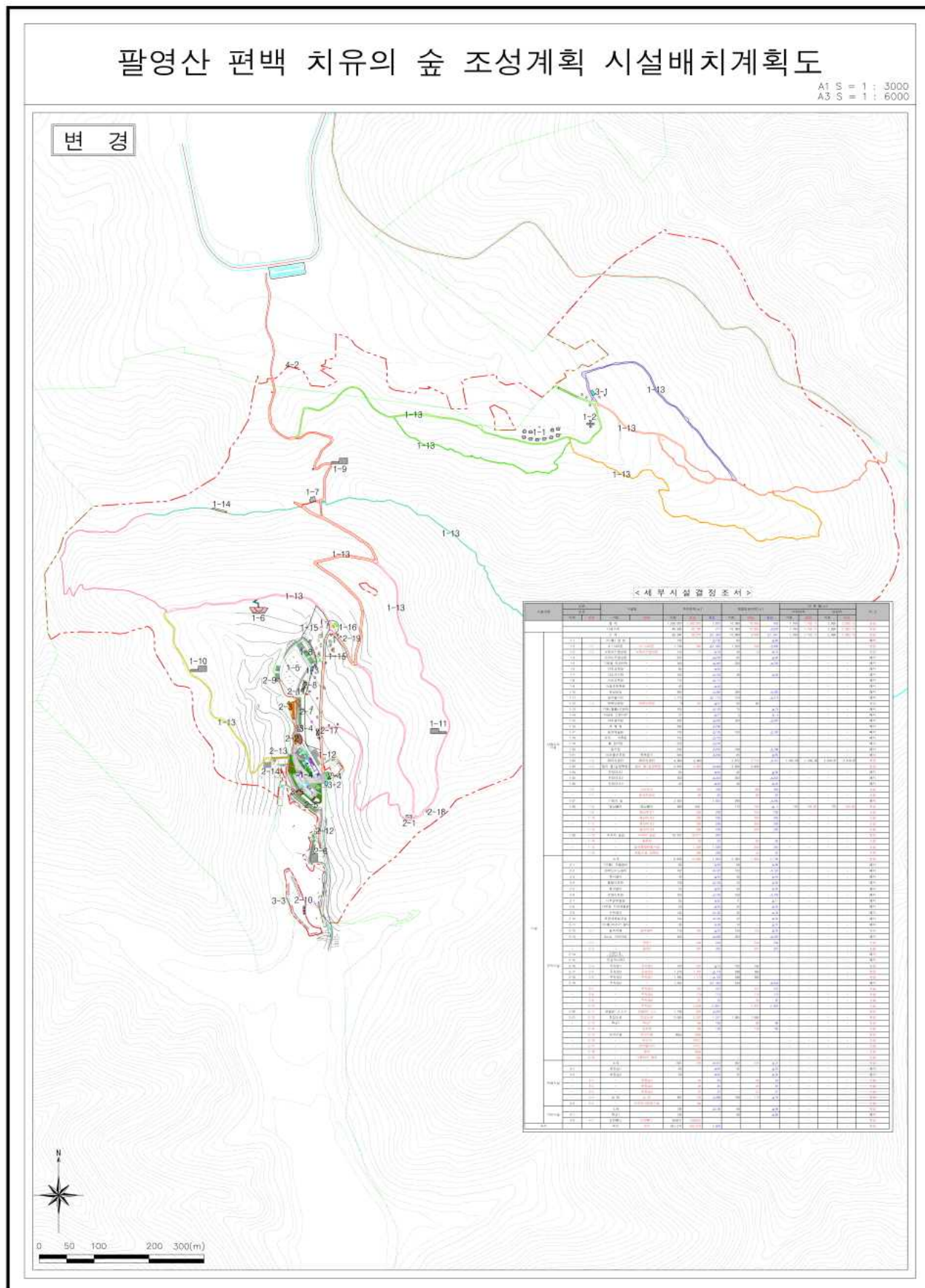
※ 시설 폐지

○ 산림치유시설 : 기(氣)압로, 피라미드명상원, 기채움전망타워, 약초교육장, 다도의식탁, 버섯교육장, 야생초화류원, 토암강당, 암석놀이터, 기원(氣願)조망대, 서낭당소원나무, 야외음악당, 색채원, 음양예술원, 유자·석류원, 氣 암석원, 향기원, 야외물치유장, 전망데크(1,2,3), 기원의 숲

○ 편익시설 : 기(氣)오름쉼터, 편백도미노쉼터, 독서쉼터, 돌탑아트원, 휴게쉼터, 조형아트원, 나무꾼체험장, 나무꾼지게체험장, 수면쉼터, 목공예체험교실, 기(氣) 바라기쉼터, sola야외마당, 소망의길, 진입게이트2

7. 승인 연월일 : 2019년 10월 23일

8. 시설배치계획도(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5호

2019년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8차)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2019년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 시 행 자 : 고흥군수, 진도군수

3. 사업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저수지 개보수로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정영농 도모

나. 사업개요

지구명	위 치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총괄	' 19년	' 20년			
계				3개소	1,750	750	1,000			
지 북	고흥	두원	학곡	저수지 1	600	200	400	' 19. 11. ~ ' 20. 10.	고흥군수	
원두2	고흥	도덕	가야	저수지 1	800	200	600	' 19. 11. ~ ' 20. 10.	고흥군수	
연 주	진도	의신	연주	저수지 1	350	350	-	' 19. 11. ~ ' 20. 11.	진도군수	

4.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고흥군 건설과(☎061-830-5492), 진도군 안전건설과(☎061-540-3484)

5. 지구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다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지북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시군	읍면	리동					성 명	주 소
계				6필지		57,173	3,079		
1	고흥	두원	학곡	산27-1	임	47,405	1,437	류신근 외 1인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215
2	고흥	두원	학곡	1477-7	구	5,378	30	농림축산 식품부	
3	고흥	두원	학곡	181-1	유	575	575	정귀삼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581
4	고흥	두원	학곡	180-1	유	552	552	정병갑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221
5	고흥	두원	학곡	182-1	유	1,802	228	정락수 외 1인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230
6	고흥	두원	학곡	179-1	유	1,461	257	정병철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231

○ 원두2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시군	읍면	리동					성 명	주 소
계				9필지		50,742	1,774		
1	고흥	도덕	가야	산275	임	15,043	298	신현국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85-7 이삭아파트 201-301
2	고흥	도덕	가야	무지번	유	881	483	고흥군	
3	고흥	도덕	가야	2946	답	2,420	66	장진수	전남 여수시 화정면 화백길 44-1
4	고흥	도덕	가야	산276	임	11,702	310	장종희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409-55
5	고흥	도덕	가야	산266	임	10,767	31	신안주씨창국 공종중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169-1
6	고흥	도덕	가야	2904	유	172	50	고흥군	
7	고흥	도덕	가야	2907	유	268	230	고흥군	
8	고흥	도덕	가야	2900	답	7,080	46	장일근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2462-1
9	고흥	도덕	가야	3041	구	2,409	260	농수산부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6호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장성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추가해제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1.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장성군청 도시재생과(061-390-7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518,581,000	-	518,581,000	100.0	
도 시 지 역	소 계		108,637,200	-	108,637,200	20.9	
	주 거 지 역	소 계	8,061,841	증) 808,375	8,870,216	1.7	
		제1종전용주거지역	632,070	-	632,070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5,707,894	증) 808,375	6,516,269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1,485,680	-	1,485,680	0.3	
		제3종일반주거지역	11,710	-	11,710	0.0	
		준주거지역	224,487	-	224,487	0.0	
	상 업 지 역	소 계	723,314	-	723,314	0.1	
		일반상업지역	689,300	-	689,300	0.1	
		근린상업지역	34,014	-	34,014	0.0	
	공 업 지 역	소 계	2,108,285	-	2,108,285	0.4	
		일반공업지역	1,455,201	-	1,455,201	0.3	
		준공업지역	653,084	-	653,084	0.1	
	녹 지 지 역	소 계	97,743,760	감) 808,375	96,935,385	18.7	
		생산녹지지역	1,969,456	-	1,969,456	0.4	
		자연녹지지역	95,774,304	감) 808,375	94,965,929	18.3	
비 도 시 지 역	소 계		409,943,800	-	409,943,800	79.1	
	관 리 지 역	소 계	127,085,768	-	127,085,768	24.5	
		보전관리지역	52,293,850	-	52,293,850	10.1	
		생산관리지역	39,772,710	-	39,772,710	7.7	
		계획관리지역	35,019,208	-	35,019,208	6.8	
	농림지역		249,219,708	-	249,219,708	48.1	
	자연환경보전지역		33,638,324	-	33,638,324	6.5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9-20호(2019.3.19)에 의한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 고시 반영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계		-	-	808,375	-	
41	장성읍 유평3리 132번지 일원(유평지구)	자연 녹지 지역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17,833	200	•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정비를 통 해 개발제한구역해제 목적달성과 저층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을 위해 주택이 밀집한 기 해제지 역을 중심으로 1종일반 주거지역 으로 변경
42	진원면 울곡1리 64번지 일원(울곡지구)			42,408		
43	진원면 선적1리 286번지 일원(선동지구)			19,237		
44	진원면학림1리 814번지 일원(학림지구)			22,201		
45	진원면 학림1리 236번지 일원(모천지구)			26,712		
46	진원면 상림1리 778번지 일원(민수지구)			22,655		
47	진원면 용산1리 900번지 일원(학산지구)			30,344		
48	진원면 용산2리 389번지 일원(주평지구)			18,764		
49	진원면 용산2리 494번지 일원(청용지구)			34,647		
50	진원면 용산3리 250번지 일원(용산지구)			28,351		
51	진원면 용산3리 801번지 일원(초동지구)			39,448		
52	진원면 학전2리 33-1번지 일원(덕촌지구)			13,849		
53	남면 분향3리 837-1번지 일원(마흥지구)			25,619		
54	남면 덕성3리 352번지 일원(덕성지구)			30,989		
55	남면 미령1리 697번지 일원(외마지구)			26,421		
56	남면 미령3리 323번지 일원(백운지구)			47,957		
57	남면 미령3리 96번지 일원(시정지구)			21,004		
58	남면 평산2리 153번지 일원(평산지구)			37,642		
59	남면 행정1리 47번지 일원(승가지구)			28,678		
60	남면 행정1리 476번지 일원(행정지구)			34,218		
61	남면 월정2리 404번지 일원(월계지구)			11,041		
62	남면 월정2리 447번지 일원(우치지구)			19,447		
63	남면 월정2리 14-1번지 일원(신아산지구)			6,398		
64	남면 월곡1리 143번지 일원(금리지구)			21,199		
65	남면 월곡2리 928번지 일원(덕촌下지구)			15,335		
66	남면 월곡3리 270번지 일원(신촌지구)			38,187		
67	동화면 월산3리 525번지 일원(임정지구)			40,029		
68	동화면 구룡1리 132번지 일원(동각지구)			25,127		
69	황룡면 와룡리 341-1번지 일원(방곡지구)			17,086		
70	황룡면 와룡리 81번지 일원(와곡지구)			29,977		
71	황룡면 옥정2리 485번지 일원(월암지구)			15,572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자연취락지구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791,250	감) 791,250	-	-	
폐지	4	유탕	자연 취락 지구	장성읍유탕3리 132번지 일원	-	20,100	감) 20,100	-	전남고시 2005-81호 ('05.6.3)	
폐지	51	울곡		진원면 울곡1리 64번지 일원	-	41,000	감) 41,000	-		
폐지	52	선동		진원면 선적1리 286번지 일원	-	20,600	감) 20,600	-		
폐지	53	덕촌		진원면학전2리 33-1번지 일원	-	13,950	감) 13,950	-		
폐지	54	학림		진원면 학림1리 814번지 일원	-	20,500	감) 20,500	-		
폐지	55	모천		진원면학림1리 236번지 일원	-	25,500	감) 25,500	-		
폐지	56	만수		진원면 상림1리 778번지 일원	-	22,650	감) 22,650	-		
폐지	57	학산		진원면 용산1리 900번지 일원	-	30,300	감) 30,300	-		
폐지	58	청용		진원면 용산2리 494번지 일원	-	31,400	감) 31,400	-		
폐지	59	초동		진원면 용산3리 801번지 일원	-	37,950	감) 37,950	-		
폐지	60	주평		진원면 용산2리 389번지 일원	-	18,600	감) 18,600	-		
폐지	61	용산		진원면 용산3리 250번지 일원	-	26,350	감) 26,350	-		
폐지	81	마흥		남면 분향3리 837-1번지 일원	-	24,250	감) 24,250	-		
폐지	82	덕성		남면 덕성3리 352번지 일원	-	28,300	감) 28,300	-		
폐지	83	외마		남면 마령1리 697번지 일원	-	23,800	감) 23,800	-		
폐지	84	백운		남면 마령3리 323번지 일원	-	44,900	감) 44,900	-		
폐지	85	시정		남면 마령3리 96번지 일원	-	18,500	감) 18,500	-		
폐지	86	평산		남면 평산2리 153번지 일원	-	36,750	감) 36,750	-		
폐지	87	행정		남면 행정1리 476번지 일원	-	31,000	감) 31,000	-		
폐지	88	승가		남면 행정1리 47번지 일원	-	27,150	감) 27,150	-		
폐지	89	월계		남면 월정2리 404번지 일원	-	10,900	감) 10,900	-		
폐지	90	우치		남면 월정2리 447번지 일원	-	17,900	감) 17,900	-		
폐지	91	신아산		남면 월정2리 14-1번지 일원	-	21,450	감) 21,450	-		
폐지	92	금리		남면 월곡1리 143번지 일원	-	20,700	감) 20,700	-		
폐지	93	신촌		남면 월곡3리 270번지 일원	-	37,500	감) 37,500	-		
폐지	94	덕촌下		남면 월곡2리 928번지 일원	-	12,200	감) 12,200	-		
폐지	135	임정		동화면 월산3리 525번지 일원	-	37,850	감) 37,850	-		
폐지	137	동각		동화면 구룡1리 132번지 일원	-	25,600	감) 25,600	-		
폐지	262	외곡		황룡면외룡리81번지 일원	-	32,900	감) 32,900	-		
폐지	263	방곡		황룡면외룡리341-1번지 일원	-	16,800	감) 16,800	-		
폐지	264	월암		황룡면 옥정2리 485번지 일원	-	13,900	감) 13,900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합계		31개지구, 791,250㎡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자연취락지구 폐지
4	유탕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0,100㎡)	
51	율곡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41,000㎡)	
52	선동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0,600㎡)	
53	덕촌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13,950㎡)	
54	학림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0,500㎡)	
55	모천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5,500㎡)	
56	만수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2,650㎡)	
57	학산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30,300㎡)	
58	청용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31,400㎡)	
59	초동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37,950㎡)	
60	주평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18,600㎡)	
61	용산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6,350㎡)	
81	마흥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4,250㎡)	
82	덕성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8,300㎡)	
83	외마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3,800㎡)	
84	백운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44,900㎡)	
85	시정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18,500㎡)	
86	평산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36,750㎡)	
87	행정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31,000㎡)	
88	승가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7,150㎡)	
89	월계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10,900㎡)	
90	우치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17,900㎡)	
91	신아산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1,450㎡)	
92	금리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0,700㎡)	
93	신촌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37,500㎡)	
94	덕촌下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12,200㎡)	
135	임정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37,850㎡)	
137	동각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25,600㎡)	
262	와곡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32,900㎡)	
263	방곡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16,800㎡)	
264	월암	•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13,900㎡)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장성읍, 진원면, 남면, 동화면, 황룡면 일원	81,706,324	감) 210,270	81,496,054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4-158호 (2014.06.19)면적임

■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 사유
계			-	감) 210,270	
변경	41	유탕	장성읍 유탕3리 132번지 일원	감) 1,014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기반시설 확보 등 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변경	42	울곡	진원면 울곡1리 64번지 일원	감) 2,159	
변경	43	선동	진원면 선적1리 286번지 일원	감) 10,894	
변경	44	학림	진원면 학림1리 814번지 일원	감) 6,717	
변경	45	모천	진원면학림1리 236번지 일원	감) 7,502	
변경	46	민수	진원면 상림1리 778번지 일원	감) 12,008	
변경	47	학산	진원면 용산1리 900번지 일원	감) 13,964	
변경	48	주평	진원면 용산2리 389번지 일원	감) 9,274	
변경	49	청용	진원면 용산2리 494번지 일원	감) 12,420	
변경	50	용산	진원면 용산3리 250번지 일원	감) 12,953	
변경	51	초동	진원면 용산3리 801번지 일원	감) 4,439	
변경	52	덕촌	진원면 학전2리 33-1번지 일원	감) 1,139	
변경	53	마흥	남면 분향3리 837-1번지 일원	감) 7,386	
변경	54	덕성	남면 덕성3리 352번지 일원	감) 9,018	
변경	55	외마	남면 미령1리 697번지 일원	감) 8,685	
변경	56	백운	남면 미령3리 323번지 일원	감) 4,912	
변경	57	시정	남면 미령3리 96번지 일원	감) 2,504	
변경	58	평산	남면 평산2리 153번지 일원	감) 2,191	
변경	59	승가	남면 행정1리 47번지 일원	감) 4,094	
변경	60	행정	남면 행정1리 476번지 일원	감) 16,499	
변경	61	월계	남면 월정2리 404번지 일원	감) 141	
변경	62	우치	남면 월정2리 447번지 일원	감) 3,731	
변경	63	신아산	남면 월정2리 14-1번지 일원	감) 313	
변경	64	금리	남면 월곡1리 143번지 일원	감) 4,061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 사유
변경	65	덕촌下	남면 월곡2리 928번지 일원	감) 12,268	
변경	66	신촌	남면 월곡3리 270번지 일원	감) 687	
변경	67	임정	동화면 월산3리 525번지 일원	감) 4,175	
변경	68	동각	동화면 구룡1리 132번지 일원	감) 11,094	
변경	69	방곡	황룡면 외룡리 341-1번지 일원	감) 12,403	
변경	70	외곡	황룡면 외룡리 81번지 일원	감) 2,934	
변경	71	월암	황룡면 옥정2리 485번지 일원	감) 8,691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해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의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해룡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 변경사유

- 원활한 오폐수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반영(160억원)
- 산업시설용지 원활한 분양을 위한 유치산업의 업종코드 추가(3구역 C20 추가)
- 분양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기간 1년 연장

◆ 근거법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구 분	임대단지	일반단지
시 행 자	순천시	(주)대우건설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구 분	개 발 기 간		비 고
	당초	변경	
임대단지	2003 ~ 2008(6년)	2003 ~ 2008(6년)	변경 없음
일반단지	2009 ~ 2018(10년)	2009 ~ 2019(11년)	변경(1년 연장)

※ 변경사유 : 분양부진으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

나. 시행방법(변경 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

○ 사업비 내역(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기 정			변 경		
	계	임대단지	일반산단	계	임대단지	일반산단
계	3,155	453	2,702	3,315	453	2,862
공 사 비	1,640	310	1,330	1,640	310	1,330
보 상 비	1,006	129	877	1,006	129	877
기 타	509	14	495	669	14	655

○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임대단지	일반산단											
			2008년이전	소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 정	계	3,155	453	2,702	27	354	210	318	411	258	22	225	45	832	-
	공사비	1,640	310	1,330	14	1	58	219	303	35	10	125	-	565	-
	보상비	1,006	129	877	3	317	102	16	26	140	-	37	-	236	-
	기 타	509	14	495	10	36	50	83	82	83	12	63	45	31	-
변 경	계	3,315	453	2,862	27	354	210	318	411	258	22	225	45	11	981
	공사비	1,640	310	1,330	14	1	58	219	303	35	10	125	-	-	565
	보상비	1,006	129	877	3	317	102	16	26	140	-	37	-	-	236
	기 타	669	14	655	10	36	50	83	82	83	12	63	45	11	180

○ 연도별, 재원별 조달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	임대단지							일반산단											
			소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 정	총사업비	3,155	453	61	30	65	146	113	38	2,702	27	354	210	318	411	258	22	225	45	832	-
	국고보조	503	99	10	20	20	17	32	-	404	-	-	-	-	98	161	-	-	-	145	-
	국고용자	111	111	50	10	10	41	-	-	-	-	-	-	-	-	-	-	-	-	-	-
	소 계	2,500	202	1	-	35	88	40	38	2,298	27	354	210	318	313	97	22	225	45	687	-
	순천시	202	202	1	-	35	88	40	38	-	-	-	-	-	-	-	-	-	-	-	-
	기업금융	1,487	-	-	-	-	-	-	-	1,487	27	354	210	318	313	97	3	165	-	-	-
	분양대금	811	-	-	-	-	-	-	-	811	-	-	-	-	-	-	19	60	45	687	-
임대보증금		41	41	-	-	-	-	41	-	-	-	-	-	-	-	-	-	-	-	-	-

구 분		전체	임대단지							일반산단												
			소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변 경	총사업비	3,315	453	61	30	65	146	113	38	2,862	27	354	210	318	411	258	22	225	45	11	981	
	국고보조	503	99	10	20	20	17	32	-	404	-	-	-	-	98	161	-	-	-	-	145	
	국고용자	111	111	50	10	10	41	-	-	-	-	-	-	-	-	-	-	-	-	-	-	
	시 행 자 조 달	소 계	2,660	202	1	-	35	88	40	38	2,458	27	354	210	318	313	97	22	225	45	11	836
		순천시	202	202	1	-	35	88	40	38	-	-	-	-	-	-	-	-	-	-	-	-
		기업금융	1,487	-	-	-	-	-	-	-	1,487	27	354	210	318	313	97	3	165	-	-	-
		분양대금	811	-	-	-	-	-	-	-	811	-	-	-	-	-	-	19	60	45	11	676
		기타비용	160	-	-	-	-	-	-	-	160	-	-	-	-	-	-	-	-	-	-	160
임대보증금	41	41	-	-	-	-	41	-	-	-	-	-	-	-	-	-	-	-	-	-		

○ 기업금융자금 조달계획(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차입예정액	기 정	1,487억원	
	변 경	1,647억원	
차입기간	기 정	9년(2009-2017)	
	변 경	10년(2009-2018)	
상환방법		만기 일시 상환	
예상금리		총 조달금리 약 8%(AO 회사채금리 기준)	
대출수수료		약 1.5%(약정수수료등 부대비용 포함)	

※ 변경사유 :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반영 및 사업기간 1년 연장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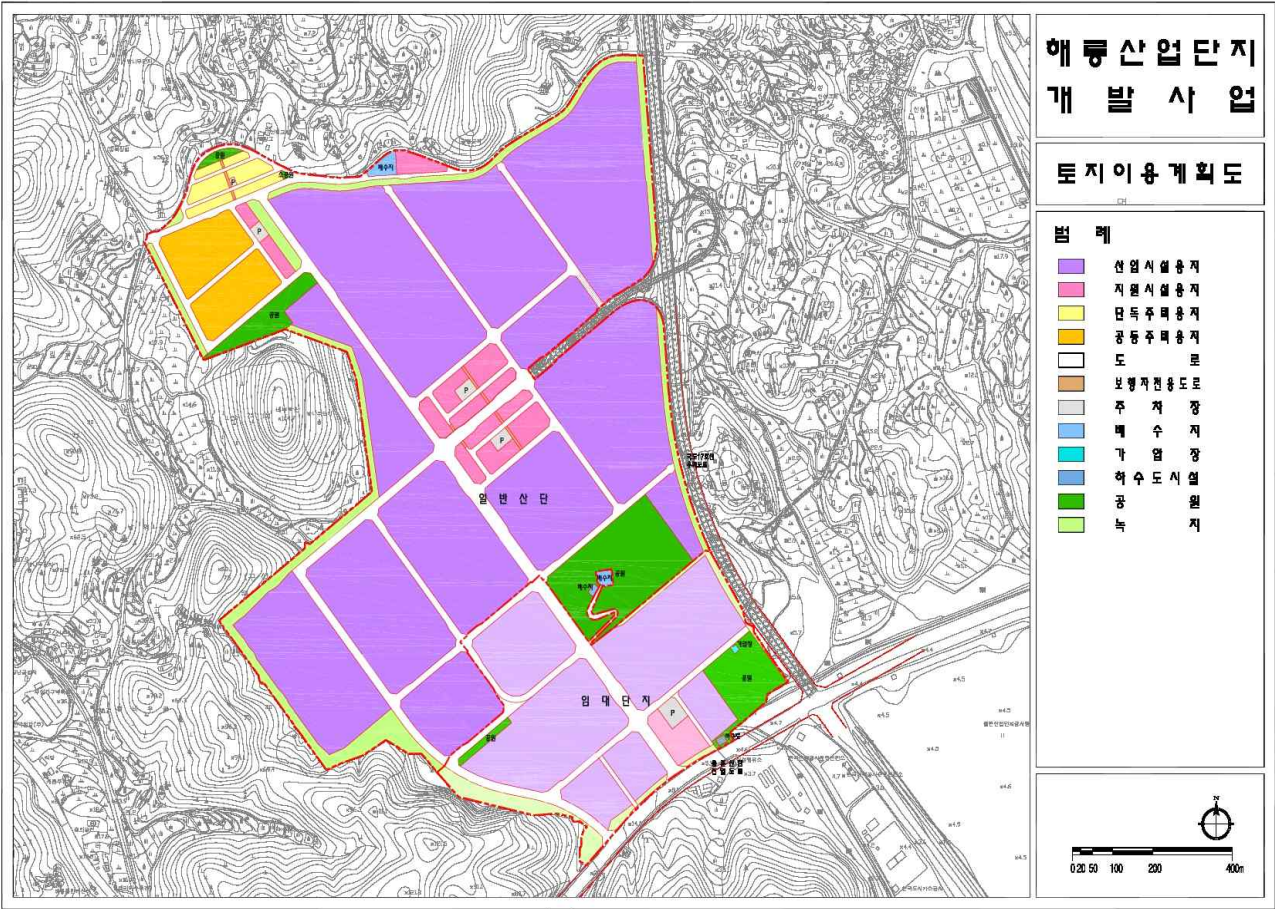
6.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가. 토지이용계획표(변경 없음)

구 분	해룡산업단지(㎡)		임대단지(㎡)	일반산단(㎡)
	면적(㎡)	구성비(%)		
합 계	1,592,808.3	100.0	331,405	1,261,403.3
산업시설용지	1,043,186.2	65.5	209,140	834,046.2
지원시설용지	59,762.8	3.8	9,949	49,813.8
주택건설용지	64,870.5	4.1	-	64,870.5
공동주택(기숙사용지)	48,855.0	3.1	-	48,855.0
단독주택(이주택지)	16,015.5	1.0	-	16,015.5

구 분		해룡산업단지(㎡)		임대단지(㎡)	일반산업(㎡)
		면적(㎡)	구성비(%)		
공공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215,399.4	13.5	61,392	154,007.4
	도로	200,963.4	12.6	56,431	144,532.4
	보행자도로	1,854.1	0.1	-	1,854.1
	주차장	7,489.9	0.5	2,972	4,517.9
	배수지	4,457.0	0.3	1,354	3,103.0
	가압장	240.0	0.0	240	-
	하수도시설	395.0	0.0	395	-
	공원녹지시설	209,589.4	13.2	50,924	158,665.4
	공원	101,975.4	6.4	26,479	75,496.4
	녹지	107,614.0	6.8	24,445	83,169.0

나.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없음)



7.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없음)

가. 용수

구 분	공급계획	비 고
공업용수	울촌산단 정배수지에서 단지내 가압장을 통해 배수지1(임대단지, 일반산단 2-1단계)과 배수지2(일반산단 2-2단계)로 압송하여 공급	울촌산단 정배수지
생활용수	이주자 택지는 정채봉길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에서 공급	

나. 에너지

구 분	공 급 계 획	비 고
에 너 지	LNG를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연료 공급	LNG사용

다. 전력공급

구 분	공 급 계 획	비 고
전 력	단지내 전력공급은 울촌변전소에서 공급	울촌변전소

라. 정보통신망 구축

구 분	공 급 계 획	비 고
통 신	단지내 통신공급은 올레KT 순천지사에서 공급	올레KT 순천지사

마.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처 리 계 획	비 고
폐 기 물	단지내 발생폐기물을 전량 위탁처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울촌산단 폐기물 매립장)	위탁처리

바. 하수처리계획

구 분	처리계획	비 고
우 수	단지내 계획관거를 통해 국도17호선을 통과하는 수로암거 및 울촌산단배수로에 인입하여 광양만으로 방류	자연유하식
오·폐수	산업시설에서 1차처리후 전량 울촌산단 오폐수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재처리 이주자택지 오수는 전량 오수관로를 통하여 차집하여 간이오수 처리시설에서 정화 처리후 방류	울촌산단과 통합처리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기본방향(변경 없음)

- 사업구역에 포함된 2개마을(구상, 통천)의 이주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종사자 정주공간 확보를 고려한 주거시설 계획

나.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 산업별 유발인구(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종사자수	4,470	4,340	감) 130

※ 변경사유 : 유치산업의 업종코드 추가(3구역 C20 추가)로 인한 원단위 변경 적용

○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구 분	상근인구	이용인구
인구	624	1,872

○ 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구 분	세대수	인구
계	2,014	4,078
단독주택	60	170
공동주택	1,954	3,908

9.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 도로(변경 없음)

구 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m ²)	비 고
합 계	-	39	12,043	202,817.5	
일반도로	-	30	11,734	200,963.4	
대로	소 계	2	1,222	38,184.2	
	1 류	-	-	-	
	2 류	1	941	30,146.5	
	3 류	1	281	8,037.7	
중로	소 계	21	8,871	148,305.9	
	1 류	3	2,223	45,302.1	
	2 류	14	5,675	90,995.0	
	3 류	4	973	12,008.8	
소로	소 계	7	1,641	14,473.3	
	1 류	2	298	3,022.0	
	2 류	4	1,089	9,622.3	
	3 류	1	254	1,829.0	
보행자전용도로	-	9	309	1,854.1	
소로	3 류	9	309	1,854.1	

○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²)	비 고
합 계	5개소	7,489.9	
주차장	노외주차장1	2,972.0	임대단지
	노외주차장2	1,200.0	일반산단
	노외주차장3	1,520.0	
	노외주차장4	1,517.9	
	노외주차장5	280.0	

10.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기본방향(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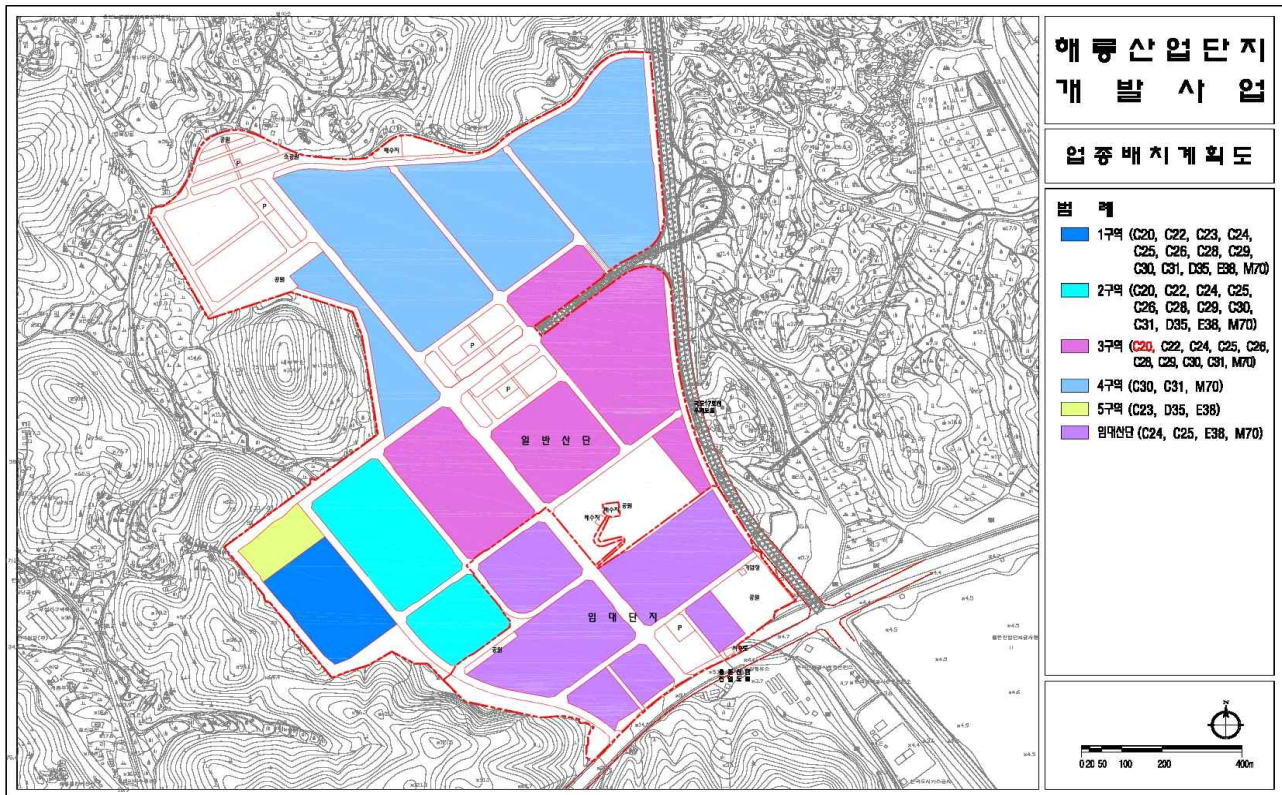
나. 유치업종 선정(변경 없음)

다. 업종배치계획(변경)

구분	유치업종		면적(㎡)
	기정	변경	
계	13개 업종	13개 업종	1,043,186.2
1구역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M70 연구개발업	변경 없음	56,033.8
2구역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M70 연구개발업	변경 없음	113,128.2
3구역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269,173.8

구분	유치업종		면적(㎡)
	기정	변경	
4구역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 기타 운송장비 M70 연구개발업	변경 없음	375,249.0
5구역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E38 폐기물 수집처리 D35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변경 없음	20,461.4
임대 산단	C24 1차 금속 C25 금속가공 E38 폐기물 수집처리 M70 연구개발업	변경 없음	209,140.0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원활한 분양을 위한 유치산업의 업종코드 추가(3구역 C20 추가)
다. 업종배치계획도(변경)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 없음)

17.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계획(변경)

- 용수계획 : ‘상수도 시설기준 2010’ 및 ‘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2010.12’에 의거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합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합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용 수 량 (㎥/일)	6,967	4,614	2,353	7,021	4,681	2,340

- 하수계획 : ‘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04.12’에 의거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합 계	산업폐수	생활오수	합 계	산업폐수	생활오수
하 수 량 (㎥/일)	3,728	1,608	2,120	3,842	1,733	2,109

※ 변경사유 : 유치산업의 업종코드 추가(3구역 C20 추가)에 따른 원단위 변경 적용

나. 폐기물처리계획(변경)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후 매립처리(위탁처리)
- 「2001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02, 환경부」의 업종별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를 인용

구 분	기 정				변 경			
	합 계	생활	사업장	지정	합 계	생활	사업장	지정
발 생 량 (kg/일)	64,416	10,613	42,806	10,997	63,784	10,431	41,646	11,707

※ 변경사유 : 유치산업의 업종코드 추가(3구역 C20 추가)에 따른 원단위 변경 적용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2015. 6) 전력원단위를 적용하며, 임대산단은 기입주한 1차급속업종 업체의 에너지 실적을 조사하여 반영
- 전력공급계획 : 단지 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 후 공급

구 분	기 정			변 경		
	합 계	산업시설	기타시설	합 계	산업시설	기타시설
전력수요(kW)	65,268	57,215	8,053	65,965	57,912	8,053

※ 변경사유 : 유치산업의 업종코드 추가(3구역 C20 추가)에 따른 원단위 변경 적용

- 연료공급계획 : 전남도시가스(주)와 협의 후 LNG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연료 공급

구 분	기 정		변 경	
	열 수요량(Gcal/년)	연료 수요량(Toe/년)	열 수요량(Gcal/년)	연료 수요량(Toe/년)
에 너 지	465,967	47,368	552,102	55,982

※ 변경사유 : 유치산업의 업종코드 추가(3구역 C20 추가)에 따른 원단위 변경 적용

라.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 「올레KT 순천지사」에서 공급

구 분	합 계	산업시설	기타시설
통 신 (회선)	4,349	1,268	3,081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가. 공원계획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²)	비 고
합 계	6개소	101,975.4	
공 원	근린공원1	23,854.0	
	근린공원2	58,908.8	
	근린공원3	14,258.0	
	소 공 원1	2,625.0	
	소 공 원2	2,055.6	
	소 공 원3	274.0	

나. 녹지계획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²)	비 고
합 계	5개소	107,614.0	
녹 지	완충녹지1	3,884.0	
	완충녹지2	21,663.1	
	완충녹지3	20,821.0	
	완충녹지4	5,293.0	
	경관녹지1	55,952.9	

19.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해당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 산단조성팀 (061-760-5440)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전라남도 고시 제2019-381호

장성 맥호지구 신규마을조성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의거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40-2번지 일원에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1.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가.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 명 칭 :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 위 치 :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40-2번지 등 2필지
- 면 적 : 28,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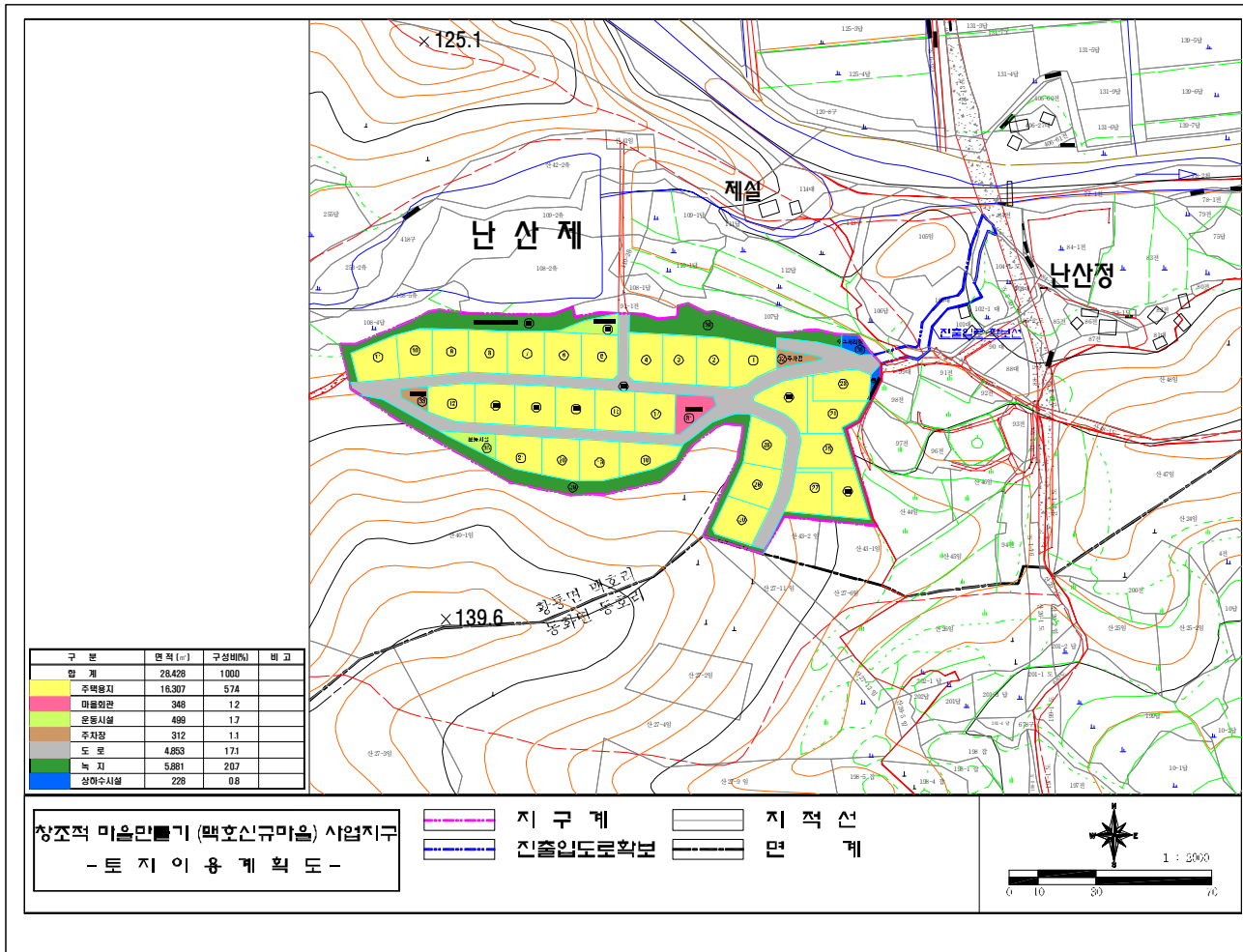
나. 사업 개요

- 사 업 비 : 6,466백만원(국비 840, 지방비 360, 자부담 5,266)
- 주 택 용 지 : 16,307㎡(30호)
- 도 로 시 설 : 단지내도로 4,853㎡
- 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공동주차장, 운동시설 및 쉼터, 조경녹지, 급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면적(㎡)	비 율 (%)	비 고
계		28,428	100	
○ 주택용지(분양용지)		16,307	57.4	30필지(평균 543.6 ㎡)
토지이용지	소 계	12,121	42.6	
	마 을 회 관	348	1.2	
	운 동 시 설	499	1.7	
	공동주차장	312	1.1	
	오수처리시설	141	0.5	
	가 압 및 비점시설	87	0.3	
	녹 지	5,881	20.7	
	단지내도로	4,853	17.1	

【 토지이용계획도 】



라. 편입 지적도 : 다음

마.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및 시행방식

○ 사업의 시행 예정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 시행방식 : 지자체-입주자주도형

바. 사업시행 예정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시행 예정자 : 장성군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 :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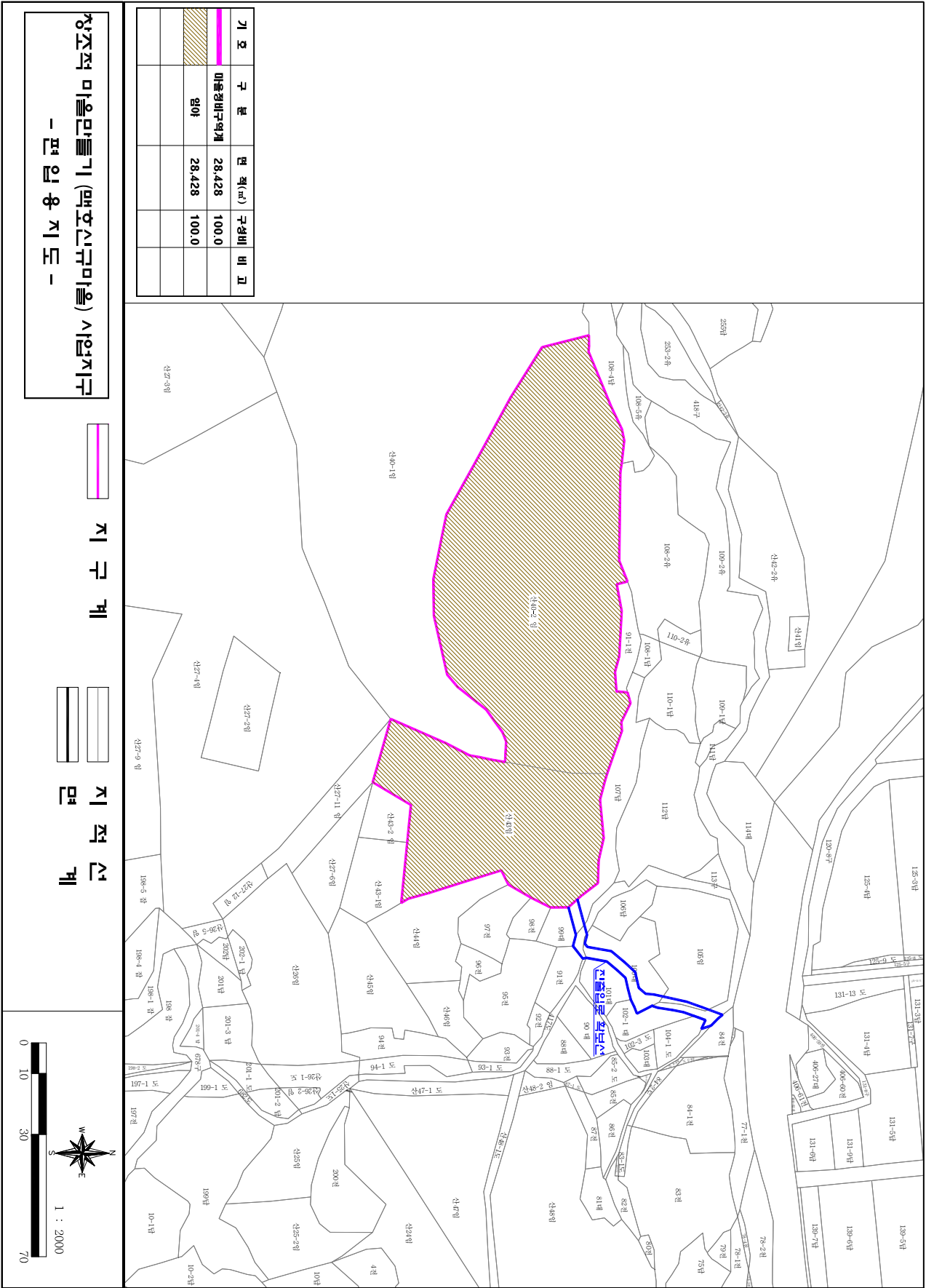
2.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전라남도청 농업정책과(☎061-286-6252)와 장성군 도시재생과(☎061-390-735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

일련 번호	토지의 표시				사업면적 (㎡)	잔여면적 (㎡)	소유권자		비고	
	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주소	성명	공유자	특기 사항
1		산40-2	임	19,728	19,72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주로56번길 46 (선주지동)	송공석 외 21		
2		산43	임	8,700	8,700	-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약산로 99	송기종 외 9		
합계		2필		28,428	28,428	-				

편입 지적도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37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에 따라 아래 업체를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상 호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영 업 소 재 지	전문분야	등록일
보강건설이엔지(주)	김두원 박동주	전남-2-277호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 작은길 24	설계·사업관리 (일반)	2019. 10. 28.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56호

도로 사용 폐지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7.

전라남도지사

1. 도로의 종류 : 국가지원지방도
2. 노선번호·노선명 : 22호선·여수 ~ 순천선
3. 도로의 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고
국 가 지 원 지방도 22호선	공용 구간	시점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134-2번지	11.64	4차로
		종점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 3-28번지		
	폐지 구간	시점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134-2번지	12.66	2차로
		종점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 3-28번지		

4. 주요 통과지 :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용주리, 창무리
소라면 관기리, 죽림리, 덕양리
5. 도로 사용 폐지일 : 2019. 11. 8. 12:00 ~
6. 도면의 열람기간 : 2019. 11. 8. ~
7. 열람장소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 061-659-5110)
8.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위 치 도



목포시 고시 제2019-196호

목포 도시계획시설(고하도유원지/주차장 화장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목포시 달동 1356번지 외 1필지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사업명 : 목포 고하도 주차장 내 화장실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계획과/관광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11. 7.

목포시장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구 분 항 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달동 1356번지 외 1필지(고하도 주차장 내)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사업명칭 : 목포 고하도 주차장 내 화장실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총 면 적 : 17,385.6㎡(주차장 16,464.9㎡, 단지내도로 920.7㎡) ○ 주차대수 : 395대 ○ 금회사업 : 주차장 내 화장실 신축(1동) <table><tr><th>동 명</th><th>층 수</th><th>건축면적(㎡)</th><th>연면적(㎡)</th><th>용 도</th><th>구 조</th></tr><tr><td>화장실</td><td>지상1</td><td>42.0</td><td>42.0</td><td>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td><td>경량 목구조</td></tr></table>	동 명	층 수	건축면적(㎡)	연면적(㎡)	용 도	구 조	화장실	지상1	42.0	42.0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경량 목구조	
동 명	층 수	건축면적(㎡)	연면적(㎡)	용 도	구 조									
화장실	지상1	42.0	42.0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경량 목구조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 ○ 성명 : 목포시장(관광과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9. 11. 7. ○ 준공예정일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붙임참조 : 목포시 달동 1356번지 외 1필지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생략(목포시청 도시계획과 / 관광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완료)	○ 공고기간 : 2019. 8. 29. ~ 2019. 9. 12.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관광과	의견 없음												
9. 기타 문의	○ 문의전화 : 061- 270- 8414(목포시청 도시계획과) 061- 270- 8217(목포시청 관광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명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17,385.6	17,385.6					
1	달동	1356	주차장	16,464.9	16,464.9	목포시				주차장
2	달동	1356-1	도로	920.7	920.7	목포시				단지내 도로

목포시 고시 제2019-197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34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목포시 옥암동 1216번지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사업명 : 미래 주차타워 신축공사】을 시행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11. 7.

목포시장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옥암동 1216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사업명칭 : 미래 주차타워 신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 897.5㎡ ○ 주차대수 : 30대(일반 27대, 장애인전용주차 3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층별	건축면적 (㎡)	연면적 (㎡)	용 도	비고
	지상1층	77.76	637.25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729.29	169.8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지상2층	-	793.61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지상3층	-	605.81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합계	807.05	2,206.47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약리 1775 ○ 성명 :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대표이사 김성호)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9. 11. 07. ○ 준공예정일 : 2020. 09. 0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 고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 열람 기간 : 2019. 05. 16. ~ 2019. 05. 30.(14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270-3511(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897.50	897.50					
1	옥암	1216	주차장	897.50	897.50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775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대인동)(하당지점)	

구분 항목	공 고 내 용	비고
6. 사용또는수용할 토지등 세목조서	○다음 ※ 변경사유 :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 지번 및 면적 변경	변경
7. 실시계획(변경)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개재 생략(도시계획과/환경보호과 비치)	변경
8.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19. 11. 7. ~ 2019. 11. 21.(14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환경보호과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 - 270 - 3331(환경보호과) 061 - 270 - 8414(도시계획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94,116	94,116	94,116	94,055					
1	달동	764-3	764-3	전	전	27	27	27	27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2	달동	764-4	764-4	답	답	92	92	92	92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3	달동	766-3	766-3	답	답	579	579	579	579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4	달동	766-4	766-4	답	전	11	375	11	375	공	목포시	국	환경부	793-5와 합병
			766-6		전		3		-	공	목포시			
5	달동	766-5	766-5	답	답	175	175	175	175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6	달동	793-114	793-114	전	전	438	438	438	438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7	달동	793-115	793-115	전	전	1,951	1,951	1,951	1,951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8	달동	793-116	793-116	전	전	1,072	1,072	1,072	1,072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9	달동	793-117	793-117	전	전	3,078	3,078	3,078	3,078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10	달동	793-118	793-118	전	전	1,153	1,153	1,153	1,15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11	달동	793-12	793-12	전	전	546	546	546	546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12	달동	793-121	793-121	전	전	683	683	683	68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13	달동	793-3	793-3	전	전	714	714	714	71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14	달동	793-4	793-4	전	전	364	364	364	36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15	달동	793-5	-	전	-	367	-	367	-	-	-	-	-	766-4로 합병
16	달동	793-9	793-9	전	전	2,013	2,013	2,013	2,01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17	달동	825-8	825-8	답	답	5	5	5	5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18	달동	826-10	826-10	답	답	311	311	311	311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19	달동	826-11	826-11	답	답	261	261	261	261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20	달동	826-14	826-14	전	전	228	228	228	228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21	달동	826-15	826-15	전	전	53	53	53	5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22	달동	826-22	826-22	답	답	307	307	307	307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23	달동	826-23	826-23	답	답	528	528	528	528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24	달동	826-24	826-24	답	답	637	637	637	637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25	달동	826-25	826-25	전	전	53	53	53	5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26	달동	826-26	826-26	전	전	3	3	3	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27	달동	826-8	826-8	답	답	344	344	344	34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8	달동	826-9	826-9	답	답	1,342	1,342	1,342	1,342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29	달동	858-1	858-1	답	답	1,190	1,190	1,190	1,190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30	달동	859-1	859-1	답	답	810	810	810	810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31	달동	860-2	860-2	답	답	228	228	228	228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32	달동	861-2	861-2	답	답	1,318	1,300	1,318	1,300	공	목포시	국	환경부	분할
			861-4				답		18	-	공	목포시		
33	달동	862-1	862-1	답	답	1,963	1,963	1,963	1,96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34	달동	863	863	답	답	2,023	2,023	2,023	2,02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35	달동	864	864	답	답	2,023	2,023	2,023	2,02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36	달동	865	865	답	답	1,927	1,927	1,927	1,927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37	달동	866	866	답	답	1,960	1,960	1,960	1,960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38	달동	867	867	답	답	3,174	3,174	3,174	3,17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39	달동	868	868	답	답	1,127	1,127	1,127	1,127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40	달동	869	869	답	답	1,653	1,653	1,653	1,65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41	달동	871	871	답	답	1,904	1,904	1,904	1,90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42	달동	872	872	답	답	114	114	114	11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43	달동	872-1	872-1	답	답	762	762	762	762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44	달동	901	901	잡	잡	12,963	12,963	12,963	12,96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45	달동	886	886	답	답	2,053	2,053	2,053	2,05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46	달동	산218-10	산218-10	임	임	867	867	867	867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47	달동	산218-8	산218-8	임	임	397	397	397	397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48	달동	793-122	793-122	전	전	7	7	7	7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49	달동	793-123	793-123	전	전	14	14	14	1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50	달동	793-124	793-124	전	전	1	1	1	1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51	달동	825-1	825-1	답	답	656	656	656	656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52	달동	873	873	잡	잡	512	512	512	512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53	달동	879	879	답	답	2,155	2,155	2,155	2,155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54	달동	880	880	답	답	1,293	1,293	1,293	1,29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55	달동	881	881	답	답	1,111	1,111	1,111	1,111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56	달동	882	882	잡	잡	645	645	645	645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57	달동	883	883	답	답	2,212	2,212	2,212	2,212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58	달동	884	884	답	답	2,036	2,036	2,036	2,036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59	달동	885	885	답	답	2,040	2,040	2,040	2,040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60	달동	887	887	답	답	2,053	2,053	2,053	2,05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61	달동	888	888	답	답	2,294	2,294	2,294	2,29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62	달동	889	889	답	답	2,215	2,215	2,215	2,215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63	달동	890	890	답	답	2,007	2,007	2,007	2,007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64	달동	891	891	답	답	1,984	1,984	1,984	1,98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65	달동	892	892	답	답	2,079	2,079	2,079	2,079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66	달동	893	893	답	답	2,093	2,093	2,093	2,09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67	달동	894	894	답	답	2,251	2,251	2,251	2,251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68	달동	895	895	답	답	1,184	1,184	1,184	1,18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69	달동	896	896	답	답	933	933	933	933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70	달동	897	897	답	답	910	910	910	910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71	달동	793-6	793-6	전	전	164	164	164	16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72	달동	793-7	793-7	답	답	66	66	66	66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73	달동	793-8	793-8	전	전	164	164	164	16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74	달동	793-10	793-10	전	전	260	260	260	260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75	달동	793-11	793-11	전	전	188	148	188	148	공	목포시	국	환경부	분할
			793-145		전		40		-	공	목포시			
76	달동	906-1	906-1	잡	잡	344	344	344	344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77	달동	870	870	잡	잡	519	519	519	519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78	달동	793-119	793-119	전	전	207	207	207	207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79	달동	904	904	도	대	1,269	1,269	1,269	1,269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80	달동	905	905	도	대	602	602	602	602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81	달동	906	906	잡	잡	1,857	1,857	1,857	1,857	공	목포시	국	환경부	지상권

여수시 고시 제2019-32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굴전 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11. 7.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여수 도시계획시설(굴전유원지)사업
 - 나. 명 칭 : 굴전 해양테마리조트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 67,372.8㎡(1공구 - 61,223.8㎡, 2공구 - 6,149㎡)
 - 나. 주요시설 : 휴양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녹지시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주)여수예술랜드 박미숙
 -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1길 12-10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5. 5. 21. ~ 2020.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다음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해당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위치	지 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비 고
계	5필지	1공구		61,223.8	61,223.8	주 소	성 명	
		2공구		6,149	6,149			
1	돌산읍 평사리	산244	임	6,149	6,149	서울시 동대문구 전능4동 558-5	이승환	2공구
2		1584	임	60,533.2	60,533.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도416 20층(삼성동)	국제자산신탁(주)	1공구
3		1585	임	166.3	166.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도416 20층(삼성동)	국제자산신탁(주)	
4		1586	임	399.3	399.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도416 20층(삼성동)	국제자산신탁(주)	
5		1587	임	125	12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도416 20층(삼성동)	국제자산신탁(주)	

순천시 고시 제2019-205호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7.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조곡동 278-25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내용

위 치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주 소 및 성 명	
조곡동 278-25번지 일원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 사업	공원	근린공원① (봉화산공원)	10,036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공원녹지과장)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4.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가.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합 계				17,605.0	10,036.0					
1	조곡동	263-433	전	346.0	93.0	기획재정부				
2	조곡동	278	전	545.0	11.0	김용택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로 46 (풍덕동)	순천시 산림조합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길 35 (연향동)	근저당권
3	조곡동	279	전	714.0	21.0	김용택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로 46 (풍덕동)	순천시 산림조합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길 35 (연향동)	근저당권
4	조곡동	263-9	전	340.0	231.0	기획재정부				
5	조곡동	263-2	전	340.0	320.0	기획재정부				
6	조곡동	263-3	전	66.0	65.0	기획재정부				
7	조곡동	263-4	전	149.0	149.0	기획재정부				
8	조곡동	263-5	전	109.0	109.0	기획재정부				
9	조곡동	263-6	전	109.0	109.0	기획재정부				
10	조곡동	263-7	전	724.0	724.0	기획재정부				
11	조곡동	263-8	전	145.0	145.0	기획재정부				
12	조곡동	263-10	전	873.0	873.0	기획재정부				
13	조곡동	263-1	전	856.0	856.0	기획재정부				
14	조곡동	278-25	전	1,074.0	1,074.0	순천시				
15	조곡동	278-26	전	198.0	198.0	기획재정부				
16	조곡동	278-27	전	53.0	53.0	기획재정부				
17	조곡동	278-20	전	2,261.0	356.0	기획재정부				
18	조곡동	278-23	전	162.0	162.0	기획재정부				
19	조곡동	278-24	전	218.0	218.0	기획재정부				
20	조곡동	263-118	전	727.0	727.0	기획재정부				
21	조곡동	263-119	전	202.0	202.0	기획재정부				
22	조곡동	263-163	잡	526.0	526.0	순천환선정	순천시 조곡동 278-2			
23	조곡동	263-14	전	440.0	440.0	기획재정부				
24	조곡동	263-126	전	274.0	274.0	기획재정부				
25	조곡동	263-130	전	56.0	56.0	기획재정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명칭)	주소	성명(명칭)	주소	
26	조곡동	263-27	전	145.0	7.0	기획재정부				
27	조곡동	263-37	전	317.0	34.0	기획재정부				
28	조곡동	263-129	전	231.0	150.0	기획재정부				
29	조곡동	263-128	전	291.0	192.0	기획재정부				
30	조곡동	263-124	전	258.0	258.0	기획재정부				
31	조곡동	263-125	전	231.0	231.0	기획재정부				
32	조곡동	263-176	전	2,321.0	472.0	기획재정부				
33	조곡동	303-14	전	1,038.0	379.0	순천시				
34	조곡동	산69-2	임	99.0	99.0	기획재정부				
35	조곡동	303-13	전	423.0	49.0	순천시				
36	조곡동	산69-9	임	496.0	166.0	산림청				
37	조곡동	263-15	전	248.0	7.0	기획재정부				

나. 지장물 조서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연면적 (㎡)	저층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1	263-1	석축	석축	H1.5m		70m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순천시	토지소유 공공 시설물	미등기 주택
		국기봉	국기봉			3						
		계단	계단			1						
		맨홀	오수	Φ648mm		1						
		건물	함석		86							
		건물	슬라브		45							
		임목	감나무	5m		1						
		임목	배롱나무	6m		2						
		임목	말구술나무	6m		1						
		임목	편백나무 외	15m		6						
2	263-2	맨홀	오수	Φ375mm		1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미등기 주택
		맨홀	오수	Φ454mm		1						
		대문	대문			1						
		건물	스레이트		2							
		계단	계단		6							
		계단	계단		6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연면적 (㎡)	저축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대문	대문			1						
		석축	석축	H=1.0m		4.4m						
		건물	스레이트		3							
		건물	스레이트		4							
		건물	스레이트		23							
		건물	스레이트		37							
		맨홀	오수	Φ375mm		1						
		임목	감나무	7m		1						
		임목	사철나무	5m		1						
3	263-3	건물	스레이트		4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미등기 주택
		건물	스레이트		6							
		대문	대문			1						
		전주	전주			1						
		임목	사철나무	1.5m		40						
4	263-4	벽돌담	벽돌담			15m	순천시장평로 46(풍덕동)	김용택	순천시 장대길 68	기획 재정부 김복중 배석심	토지소유 세입자	미등기 주택
		건물	스레이트		22							
		건물	스레이트		12							
		부속	창고		1							
		건물	스레이트		25							
		건물	스레이트		5							
		임목	개살구나무	6m		1	순천시장평로 46(풍덕동)	김용택	순천시 장대길 68	기획 재정부 김복중 배석심	토지소유 세입자	미등기 주택
		임목	복사나무	6m		1						
		임목	팽나무 외	2.5m		2						
		임목	벚나무	8m		1						
5	263-5	임목	살구나무	10m		1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6	263-6	폐가	벽돌		15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미등기 주택
		벽돌담	벽돌담			6.6m						
		임목	윗나무	4m		1						
		임목	자두나무	6m		1						
		임목	감나무	4m		8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연면적 (㎡)	저축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7	263-7	맨홀	기타	1.3*1.3		1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미등기 주택
		보안등	보안등			1						
		부속	창고		3							
		임목	은행나무	25m		6						
		임목	철쭉나무	1.8m		500						
8	263-8	임목	감나무	4m		1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9	263-9	철문	철문			1	순천시 장대길 66	김용순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미등기 주택
		건물	스레이트		35							
		건물	스레이트		28							
		건물	스레이트		4							
		건물	스레이트		9							
		석축	석축			14m						
		임목	사철나무	1.2m		60						
		임목	무화과	7m		2						
10	263-10	맨홀	오수	Φ648mm		1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맨홀	우수	1.0*0.5*2		1						
		맨홀	우수	1.0*0.5*2		1						
		보안등	보안등			1						
		임목	편백나무	30m		3						
		임목	단풍나무 외	7~20m		5						
11	263-13	기타	기타			1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경계 저축
		건물	싱글		10							
12	263-14	건물	슬라브		3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13	263-118	부속	창고		2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14	263-125	보안등	보안등			1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15	263-126	옹벽	옹벽	H:2.0m		27m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포장재질	대리석			21m						
16	263-129	펜스	펜스	H:5~7m		36m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연면적 (㎡)	저축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17	263-130	기타	기타	2.6*2.0		3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보안등	보안등			1						
18	263-163	측구	측구	0.2*0.5		37m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환선정				
		옹벽	옹벽	H1.5~1.7m		37m						
		차단기	차단기			1						
		포장재질	블록		70							
		표지판	안내표지			1						
		옹벽	옹벽	H0.8~1.5m		27m						
		측구	측구	0.2*0.4		27m						
		임목	매실나무	3m		7						
		임목	개나리	1.4m		270						
		임목	사철나무	1m		40						
19	263-433	임목	매실나무	4m		2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20	278-20	펜스	펜스	H1.0m		16m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미등기 주택
		석축	석축	H1.4m		31m						
		건물	싱글		12							
		임목	금목서	3m		1						
21	278-23	옹벽	옹벽	H4.4m		15m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22	278-24	건물	기와		104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건물	슬라브		97							
23	278-25	계단	계단		8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순천시	토지소유	
		철문&계단	철문&계단		42							
		기타	기타			1						
		기념비	기념비			1						
		기념비	기념비			1						
		포장재질	블록		20							
		석축	석축	H0.8m		8m						
		포장재질	대리석		106							
		통신주	통신주			1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순천시	토지소유	미등기 주택
		석축	석축	H0.7~1.4		10m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연면적 (㎡)	저축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맨홀	기타	0.7*0.9		1						
		맨홀	우수	0.7*0.7		1						
		맨홀	오수	Φ450mm		1						
		건물	스레이트		5							
		건물	스레이트		48							
		석축	석축			12m						
		맨홀	오수	Φ450mm		1						
		맨홀	우수	1.0*1.0		1						
		맨홀	오수	Φ450mm		1						
		맨홀	우수	1.0*1.0		1						
		맨홀	우수	0.7*0.7								
		통신주	통신주			1						
		임목	영산홍	0.5m		20						
		임목	향나무	0.8		20						
		임목	은행나무	30m		1						
		임목	살구나무	4m		4						
		임목	살구나무	3m		1						
		임목	유자나무	3m		2						
		임목	벚나무	30m		1						
		임목	시철나무	1.3m		110						
		임목	금목수	8m		1						
		임목	헛개나무	5m		2						
		임목	모과나무	4m		1						
		임목	아로니아	2m		1						
		임목	아로니아	2m		1						
		임목	감나무	4m		1						
		임목	동백나무	6m		4						
		임목	도토리나무	8m		1						
		임목	야자나무	5m		1						
		임목	백일홍	7m		2						
		임목	은목수	8m		1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순천시	토지소유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연면적 (㎡)	저축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24	278-26	기념비	기념비			1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소유	
		맨홀	우수	1.0*0.5*2		1						
		맨홀	오수	Φ648mm		1						
		임목	돈나무	2m		1						
		임목	금목서	3m		1						
		임목	산철쭉	1m		20						
		계단	계단		4							
25	279	맨홀	우수	0.7*0.7		1		순천시	순천시 장평로 46 (풍덕동)	김용택	토지소유	
26	303-14	표지판	안내표지			1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순천시	토지 소유
		펜스	펜스	H1.5m		27m						
		측구	측구	0.3*0.3		33m						
		석축	석축	H2.0m		17m						
		포장재질	블록		9							
		측구	측구	0.2*0.3		40m						
		보안등	보안등			1						
		계단	계단			85m						
		임목	단풍나무	7m		1						
		임목	동백나무	8m		1						
		임목	동백나무	5m		1						
27	신69-2	옹벽	옹벽	H4.5m		20m		순천시 조곡동 278-2	순천 환선정		기획 재정부	토지 소유

순천시 고시 제2019-207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로,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광장)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7.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25-6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로,광장) 실시계획 내용

위 치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	연 장 (폭)	주 소	성 명	
해룡면 월전리 425-6 일원	광양만권 공영키퍼주차장 (해룡월전지구) 조성공사	주차장, 도로, 광장	계	5,167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도시과장)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주차장 150	4,812				
			대로 1-1호선	334	76m (4~5m)			
			광장 35	2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4.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주차장 150	대로 1-1호선	광장 35	부지 외	주소	성명	
계				7,541.0	5,274	4,812	334	21	107			
1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54-1	도로	743.0	205	46	159				국(건설부)	
2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370	잡종지	735.0	310	310					순천시	
3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54-4	답	26.0	18	18					전라남도	
4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54-2	답	221.0	94	94					전라남도	
5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54-3	도로	357.0	28	3	4	21			국(건설부)	
6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585-2	구거	1,241.0	677	677					국(농림수산부)	
7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25-6	잡종지	2,810.0	2,630	2,630					순천시	
8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54	답	1,408.0	1,034	1,034					순천시	
9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53-6	구거	1,409.3	38		26		12		국(농림수산부)	
10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53-8	도로	571	234		139		95		국(건설부)	
11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53-2	도로	1,151	6		6				국(건설부)	

순천시 공고 제2019-1998호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순천시 조례동 133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19. 11. 7.

순천시장

1. 위 치 : 순천시 조례동 1333-1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 조례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0호) 정비공사
3.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 류	명 칭	시설 및 규모			사업시행자	
		시설명	규 모		주 소	성 명
			면 적 (㎡)	연 장 (푼)		
도 로	조례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10호)정비공사	중로 2-10호	125	L=38m	순천시 대석3길 3-26, 3층(연향동)	(주)삼덕건설 대표 양행열

4. 사업기간 및 준공일자
 - 사업기간 : 2018. 11. 8. ~ 2019. 12. 31.
 - 준공일자 : 2019. 9. 30.
5.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광양시 고시 제2019-281호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8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5번지 일원에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8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19. 11. 7.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82호) 사업
 - 명 칭 : 진상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당 초 : 8,315㎡
 - 변 경 : 8,29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 광양시장(건설과장)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없음)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20.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변경) : 다음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건설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2844) 및 건설과(☎061-797-3446)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광양시 진상면 일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56-2	도	1,511	19	국(건설부)	-	-	-	-	
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2-9	도	461	80	국(건설부)	-	-	-	-	
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2-11	도	137	5	국(건설부)	-	-	-	-	
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2-12	도	738	1	국(건설부)	-	-	-	-	
5	기정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5-0	답	657	538	진주강씨어 사공파 22대조지회 손종희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37	-	-	-	토지분할 지번,면적 변경
	변경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5-4	답	520	520	진주강씨어 사공파 22대조지회 손종희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37	-	-	-	
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5-1	도	317	84	국(건설부)	-	-	-	-	
7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	대	65	62	광양시	-	-	-	-	
8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2	대	169	167	광양시	-	-	-	-	
9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1	대	198	198	광양시	-	-	-	-	
1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2	도	26	1	광양시	-	-	-	-	
1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6	답	249	248	광양시	-	-	-	-	
1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7	답	1,946	1,946	광양시	-	-	-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9	답	321	321	광양시	-	-	-	-	
1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25	답	222	32	김연수	전남 광양시 태금면 태인리 207	-	-	-	
15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27	도	120	2	국(건설부)	-	-	-	-	
1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28	도	214	8	국(건설부)	-	-	-	-	
17	기정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1	답	232	230	이현준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8	-	-	-	토지분할 지번변경
	변경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43	답	230	230	이현준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8	-	-	-	
18	기정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2	답	99	98	이현준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8	-	-	-	토지분할 지번변경
	변경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44	답	98	98	이현준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8	-	-	-	
19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4	차	430	429	광양시	-	-	-	-	
2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5	잡	651	651	광양시	-	-	-	-	
2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1	답	936	936	서대석	전남 광양시 진상면 신사2길 23	-	-	-	
2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2	답	419	419	양운모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22	-	-	-	
2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3	도	527	284	국(건설부)	-	-	-	-	
2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4	도	678	149	국(건설부)	-	-	-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6	답	468	468	안성숙	전남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673	진상농업 협동조합	전남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191	근저 당권	
									진상농업 협동조합	전남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191	지상권	
2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7-0	답	349	341	광양시	-	-	-	-	
27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2-1	구	48	28	광양시	-	-	-	-	
28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2-11	구	570	570	국(건설부)	-	-	-	-	
합	계	기정	28필지		12,639	8,315						토지분할 지번,면적 변경
		변경	28필지		12,618	8,297						

지장물건 조서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등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관계인의 권리종류	비고
	지번 (당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식, 주)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4필지	28건				4명		1명		
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6	감나무		30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673	안성숙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191	진상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매실		10						
		팽나무		1						
		영농손실보상		468			-	-	-	
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1	매실		55	광양시 진상면 신시2길 23	서대석	-	-	-	
		영농손실보상		936						
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2	농막	7.5*7	52.5	광양시 진상면 학연로 6	양윤모	-	-	-	
		농막내 선반		1			-	-	-	
		건조기		1			-	-	-	
		선별기		1			-	-	-	
		동산이전비		1			-	-	-	
		가림막		2			-	-	-	
		바닥	콘트리트	130.0			-	-	-	
		철조망	93*.15	139.5			-	-	-	
		철문		2			-	-	-	
		비닐하우스		20			-	-	-	
		관정		1			-	-	-	
		수도시설	2*1	2			-	-	-	
		표고원목		50			-	-	-	
		블루베리나무		1			-	-	-	
		감나무		10			-	-	-	
		엄나무		3			-	-	-	
		사과나무		4			-	-	-	
		두릅나무		3			-	-	-	
		모과나무		1			-	-	-	
		동백나무		2			-	-	-	
		영농손실보상		355			-	-	-	
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43, 44	영농손실보상		110	광양시 진상면 학연로 12	이현준	-	-	-	

광양시 고시 제2019-282호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장 제82호)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장 제82호)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9. 11. 7.

광양시장

1.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면적(㎡)			최종 결정일
	시설명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장	82	근린광장	8,315	-	-	2019. 6. 13.
변경	광장	82	근린광장	8,315	감18	8,297	금회결정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시설명	변경 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장 82	광장 82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감	• 도시계획시설(광장)로 결정된 광장 제82호에 대한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2.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 061-797-2844) 및 건설과(☎ 061-797-3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공고 제2019-661호

구례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구례군 청사 증축에 따른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7.

구례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사업의 명칭 : 구례군 청사 증축
3. 면적 또는 규모(건축면적 변경)
 - 부지면적 : 17,949㎡(분할시행 대지면적 13,113㎡)
 - 건축면적/연면적: 당초 3,391.4㎡/7,825.99㎡→변경 3,459.78㎡/7,894.38㎡ 증68.3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례군수(재무과장)
 - 주 소 :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0. 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다음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9. 11. 7. ~ 2019. 11. 21.(14일간)
 - 열람장소 : 구례군 안전도시과
 - 의견서 제출: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구례군 안전도시과에 비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안전도시과(☎061-780-2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총계					56,024	17,949					
1	구례	봉남	49	대	421	421	구례군				
2			1175	대	3,054	3,054	구례군				
3			1175-7	대	543	543	구례군				
4			1181	대	3,543	3,543	구례군				
5			51	대	8,918	8,734	구례군				
6			1178-3	대	109	106	구례군				
7			1183-2	도	66	66	구례군				
8			51-3	도	1,337	141	구례군				
9			52-1	도	945	82	구례군				
10			60	도	839	60	구례군				
11			1192-1	도	1,106	74	구례군				
12			1100-1	학	1,408	1	구례군				
13			359-62	구	69	10	국(건설부)				
14			2199-19	구	618	38	국(건설부)				
15			2202-2	도	120	120	국(건설부)				
16			367-29	도	36	3	국(건설부)				
17			368-1	도	718	18	국(건설부)				
18			2199-24	대	29	6	국(기획 재정부)				
19			369	구	1,353	25	국(농림부)				
20			1184답	답	165	124	김*평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836,115동1702호 (불로동,월드A)			
21			1192-2전	전	47	47	김*오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118			
22			1184-3 대	대	50	50	김*선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34			
23			1184-5 대	대	350	343	김*선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34			
24			59-1도	도	50	23	서*석				
25			1184-1구	구	387	311	이*호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168-44 강서아파트1동501호			
26			50-1학	학	1,530	5	전라남도 (교육감)				
27			1093학	학	28,213	1	전라남도 (교육감)				

구례군 공고 제2019-663호

구례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구례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합니다.

2019. 11. 7.

구례군수

1. 사업의 개요

- 계 획 명 : 구례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구례군 구례읍 봉성공원, 봉동공원1 일원
- 면 적 : 봉성공원(325,032㎡), 봉동공원1(171㎡)
- 주요내용
 - 봉성공원 :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봉동공원1 :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9. 11. 7. ~ 2019. 11. 21.(14일간)
- 열람장소 : 구례군 안전도시과
-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3.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구례군 안전도시과로 서면 제출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안전도시과(☎061-780-2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군 고시 제2019-106호

보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보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성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9. 11. 7.

보성군수

1. 보성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다음
2. 보성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보성군청 도시개발과(☎061-850-557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보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도로	827	보성을 봉산리 대로3-2호선	보성을 우산리 대로3-3호선	일반 도로		2012.1.5	
변경	중로	2	27	15 ~19	보조 간선 도로	838	보성을 봉산리 대로3-1호선	보성을 옥평리 중로1-13호선	일반 도로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호선	중로2-27호선	□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B=12→15~19m ◦ L=827→838m	□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 폭원 및 선형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군 관리 계획 변경

강진군 고시 제2019-173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의거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세목 고시합니다.

2019. 11. 7.

강진군수

1. 도로노선지정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구역사유
				기점	종점		
마량면	농어촌 도로	상흥선	마량농도 303호선	마량면 마량리 31-2	마량면 마량리 산104-10	0.43	도로확포장

2. 공 사 명 : 신마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8. 11. 20. ~ 2019. 11. 19.

4. 사업시행지위치

○ 기점 :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31-2

○ 종점 :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산104-10

5. 사업시행자

○ 성명 : 강진군수

○ 주소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6. 설계도서 및 자금 계획 등 공람 기간 및 장소

○ 공고일자 : 2019.3.5.~2019.3.20.(15일)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09:00~18:00)

○ 공람장소 : 강진군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61-430-340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다음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계의 주소

토지세목 조서

○ 소재지 :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구분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지분율)
					성명	주소	
1	마량리	30-4	전	458	김*해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베리스토리트 ****	전필
2	마량리	30-21	전	73	김*관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3	마량리	30-22	전	44	김*해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베리스토리트 ****	
4	마량리	31-1	대	499	이*규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전필
5	마량리	31-2	도	129	신*완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	전필
6	마량리	33-35	전	1102	정*순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7	마량리	33-37	전	183	박*서	전남 강진군 마량면 서중길 1, ***호(****)	
8	마량리	38-42	전	1113	권*관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9	마량리	38-45	전	423	김*호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10	마량리	38-46	전	70	권*인	인천 부평구 삼산동 ***- *****아파트 ***동 ****호	
11	마량리	38-47	잡	27	국(기****부)		
12	마량리	38-48	전	148	권*관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13	마량리	38-49	전	69	권*관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14	마량리	39-3	전	436	이*범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전필
15	마량리	39-11	전	13	박*원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16	마량리	39-12	전	448	정*순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17	마량리	40-5	전	592	장*식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	
18	마량리	40-7	전	336	김*해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베리 스트리트****	
19	마량리	산97-7	임	99	박*주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	전필
20	마량리	산98-8	임	44	김*해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베리 스트리트 ****	
21	마량리	산99-10	임	228	이*석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	
22	마량리	산102-19	임	173	이*렬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	
23	마량리	산102-20	임	601	이*범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24	마량리	산102-22	임	47	이*범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25	마량리	산104-18	임	266	권*목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5길 **-*	

위치도



해남군 고시 제2019-153호

해남 화원농협 주유소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해남군 화원면 청룡리 일원의 화원농협 부지 내 주유소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9. 11. 7.

해남군수

1.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다음
2.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
3.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관계도서를 해남군청 안전도시과(061-530-54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 리 지 역		34,172	-	34,172	100.0	
	계획관리지역	33,904	-	33,904	99.2	
	생산관리지역	268	-	268	0.8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34,172	-	34,172		
19	청 용 지 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회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층수:3층이하 높이:20m이하	34,172	-	34,172	2009.1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34,172	-	34,172		
19	지구단위 계획구역	회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	34,172	-	34,172	2009.1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1	국지 도로	23	국도77호선	김치공장 구역내	일반 도로	-	2009.1	진입 도로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녹지 ①	완충녹지	회원면 청용리 789임 일원	5,968.2	감)1,921.1	4,047.1	2009.1	완충 녹지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녹지 ①	완충녹지	1. 유통용지에 면한 완충녹지 축소 · A=5,968.2㎡ → 4,047.1㎡ · 감) 1,921.1㎡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유소시설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유통용지에 해당하는 구간의 완충녹지 축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총괄조서 : 변경

구분	가구번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34,172	-	34,172	
기정	1	1-1	해남군 회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244.3	-	244.3	경비실
기정		1-3	해남군 회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263	-	263	진입도로
기정		1-4	해남군 회원면 청용리 609번지 일원	277	-	277	진입도로
기정	2	2-1	해남군 회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690.8	-	690.8	기숙사
기정	3	3-1	해남군 회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20,115.6	-	20,115.6	공장 및 부대시설
변경	4	4-1	해남군 회원면 청용리 789번지 일원	5,968.2	감)1,921.1	4,047.1	완충녹지
변경		4-2	해남군 회원면 청용리 609번지 일원	3,452.1	감)253.3	3,198.8	조성녹지
변경	5	5-1	해남군 회원면 청용리 609번지 일원	3,161.0	증)2,174.4	5,335.4	주유소

4-1 완충녹지 변경면적은 유통용지 변경을 반영한 면적임

4-2 조성녹지 변경면적은 유통용지 변경을 반영한 면적임

3) 건축물에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1-1	용 도	• 지정용도 : 공장 안내 및 경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1층이하
		배 치	• 지형 및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동향 배치
		형 태	• 기능에 적합한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 주조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 부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 주거용지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2	2-1	용 도	• 지정용도 : 공장 주거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1층이하
		배 치	• 주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남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 주조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 부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 공업용지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3	3-1	용 도	• 지정용도 : 공장 공업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주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동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 주조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 부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 유통·용지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5	5-1	용 도	• 지정용도 : 주유소 및 부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배 치	• 주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동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 주조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 부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녹색)

마.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A	7	국지 도로	45	면도 10호선	김치공장 구역 내	일반 도로	-	-	진입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A	• 도로 신설 - B=7m - L=45m(중 45m)	• 회원농협주유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신설에 따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변경

2.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게재생략)

3.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게재생략)

함평군 공고 제2019-1121호

나산면 초포리 진입도로 개선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나산면 초포리 진입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이의신청)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7.

함평군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나산면 초포리 진입도로 개선공사
- 나. 사업시행자 : 함 평 군 수
- 다. 사 업 위 치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741-13번지 일원
- 라. 사 업 면 적 : 3,638㎡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741-13번지 외 39필지
- 나. 물 건 : 해당없음

※ 토지 등 세부내역은 함평군청 투자개발과 지역개발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함평군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9. 11. 7. ~ 2019. 11. 21.
- 나. 열람장소 : 함평군청 투자개발과
-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함평군청 투자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

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 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보상액의 산정)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함평군 투자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함평군청 투자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투자개발과 지역개발팀☎ 061-320-15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평군계 획시설(도로:소로3-722)토지조서

○ 사업명: 나산면 초포리 진입도로 개선공사

연번	소재지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면	리	지번 (당초)	지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3,638						
1	나산면	초포리	1082-23	도	7,070	395	6,675	국 (국토해양부)				
2	나산면	초포리	741-13	전	31	31	-	함평군				
3	나산면	초포리	741-11	전	150	150	-	함평군				
4	나산면	초포리	741-12	전	97	85	12	함평군				
5	나산면	초포리	741-7	도	53	50	3	함평군				
6	나산면	초포리	741-6	도	33	10	23	함평군				
7	나산면	초포리	765-14	도	13	11	2	함평군				
8	나산면	초포리	741-5	도	33	33	-	함평군				
9	나산면	초포리	740-8	도	225	225	-	함평군				
10	나산면	초포리	740-11	도	297	230	67	함평군				
11	나산면	초포리	767-2	도	56	56	-	함평군				
12	나산면	초포리	766-5	도	36	36	-	함평군				
13	나산면	초포리	739	전	142	142	-	함평군				
14	나산면	초포리	766-4	도	16	16	-	함평군				
15	나산면	초포리	766-6	도	26	26	-	함평군				
16	나산면	초포리	766-2	구	570	240	33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	나산면	초포리	765-1	창	1,927	165	1,762	나비골농업 협동조합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822-31			
18	나산면	초포리	740-6	도	205	205	-	함평이씨송 우파문중	나산면 초포리 740-2			
19	나산면	초포리	740-3	전	803	15	788	함평이씨송 우파문중	나산면 초포리 740-2			
20	나산면	초포리	740-7	임	36	36	-	함평이씨송 우파문중	나산면 초포리 742 and 929			
21	나산면	초포리	740-4	도	63	63	-	함평이씨송 우파문중	나산면 초포리 740-2			
22	나산면	초포리	740-2	임	22,829	15	22,814	함평이씨송 우파문중	나산면 초포리 742 and 929			
23	나산면	초포리	740-5	도	20	20	-	함평이씨송 우파문중	나산면 초포리 740-2			

연번	소재지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면	리	지번 (당초)	지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24	나산면	초포리	737-2	도	36	36	-	권춘식 권영식	해보면 금계리342 해보면 금계리832			
25	나산면	초포리	765-11	도	40	40	-	이건교	나산면 초포리 656			
26	나산면	초포리	765-12	도	13	13	-	이건교	나산면 초포리 656			
27	나산면	초포리	765-13	도	16	16	-	이건교	나산면 초포리 656			
28	나산면	초포리	767-5	답	10	10	-	이건교	나산면 초포리 656			
29	나산면	초포리	740-10	도	6	6	-	이건교, 이복범, 이용섭, 이재관	나산면 초포리656 월야면 장산리774 나산면 우치리491 월야면 삼축리269			
30	나산면	초포리	766-3	도	109	109	-	이계병				
31	나산면	초포리	766-10	전	104	104	-	이계병				
32	나산면	초포리	766-1	전	309	245	64	이계병				
33	나산면	초포리	766-9	전	9	9	-	이계병				
34	나산면	초포리	765-2	전	1,557	145	1,412	이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0-2 5층-502			
35	나산면	초포리	765-3	전	876	75	801	이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0-2 5층-502			
36	나산면	초포리	765-4	전	726	80	646	이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0-2 5층-502			
37	나산면	초포리	767-1	답	866	270	596	이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0-2 5층-502			
38	나산면	초포리	741-3	전	1,609	125	1,484	이규호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10, 208동 1801호 (원동,이편한세상아파트)			
39	나산면	초포리	738-2	도	116	15	101	이송우				
40	나산면	초포리	765-10	도	93	85	8	이연교	나산면 초포리 656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사 업 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내 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함평군 공고 제2019-1127호

함평 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의 함평 베르힐C.C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제99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열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7.

함평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골프장) 사업
 - 나. 명 칭 : 함평 베르힐C.C(대중제27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1,663,030.9㎡
 - 나. 규 모 : 대중제 골프장 27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상 호 :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 다. 대 표 자 : 대표이사 김영만
 - 라. 대표자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초당로7번길 19, 106동 101호 (매곡동, 대성베르힐)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2019. 11. 7. ~ 2019. 11. 27.(20일간)
 - 나. 열람장소 : 함평군청 투자개발과

다. 의견서 제출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8. 관계도서 : “계재생략”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투자개발과(☎061-320-15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총 계(383필지)				1,758,746.6	1,663,030.9					
1	금곡리	산57	임	16,661	16,66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2	금곡리	산58	임	11,107	11,10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3	금곡리	산59	임	18,744	18,74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4	금곡리	산59-1	구	77	77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5	금곡리	산60-2	임	7,835	7,83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6	금곡리	산60-3	임	3,074	3,07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7	금곡리	산61	임	11,504	11,50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8	금곡리	산62	임	595	595	강정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35번길 54, 1301동 201호 (신기동, 신창7차부영사랑으로)			
						공명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로40번길 64-17(신기동)			
						공미연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로1293번길 7, 103동 1201호 (백운동, 힐스테이트백운)			
						권유진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93번길 6-10(월산동)			
						김국주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251번길 36(용봉동)			
						김인태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죽교상하밭로 4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위민철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545, 103동 303호 (일곡동, 호반.일신아파트)			
						유혜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40, 103동 506호 (우산동, 우미아파트)			
						이유정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218번길 2-3(지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이창환	광주광역시 남구 거북언덕1길 2-1(서동)			
						정상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279번길 2-1(농성동)			
						차기열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45번길 17, 105동 102호 (화정동, 라인동산아파트)			
						채주희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190번길 1-9(대인동)			
						최영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 87, 202동 607호 (쌍암동, 에이엠시티 센트럴파크 2차)			
						허다혜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182번길 7-1(두암동)			
9	금곡리	산63	임	3,570	3,57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	금곡리	산64	임	3,174	3,174	서순자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련동길 37-6			
11	금곡리	산65	임	12,893	12,89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	금곡리	산66-1	임	3,868	3,86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3	금곡리	산66-2	임	42,744	42,74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4	금곡리	산66-3	구	48	48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15	금곡리	산67	임	7,140	7,14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6	금곡리	산68	임	5,355	5,35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7	금곡리	산69	임	11,630	11,63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8	금곡리	산69-1	임	10,182	10,18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9	금곡리	산69-2	임	10,678	10,67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0	금곡리	산70	임	7,934	7,934	함평군	-			
21	금곡리	산71	임	11,802	11,80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2	금곡리	산72	임	19,835	19,83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23	금곡리	산73-1	임	26,131	26,13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4	금곡리	산73-2	임	18,149	18,14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5	금곡리	산73-3	구	51	51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26	금곡리	산74	임	1,785	1,785	윤습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 225			
27	금곡리	산75	임	17,653	17,653	윤영문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동 41			
						윤영신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 33			
28	금곡리	산75-1	구	13	13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29	금곡리	산75-2	구	25	25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30	금곡리	산76	임	12,893	12,89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1	금곡리	산77	임	17,554	17,55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2	금곡리	산78	임	16,364	16,36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3	금곡리	산79-1	임	19,568	19,56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4	금곡리	산79-2	임	13,190	13,190	김종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269			
						김병원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298			
						김우철	광산군 임곡면 임곡리 450			
35	금곡리	산79-3	임	5,653	5,65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6	금곡리	산79-4	임	18,881	18,88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7	금곡리	산79-8	임	359	359	정흥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리 원동 702			
38	금곡리	산79-10	임	1,052	1,052	신유길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69-4			
39	금곡리	산79-11	임	1,993	1,99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0	금곡리	산80	임	992	992	고창식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753번길 20, 107동 103호 (학동, 무등산아파트)			
						김경덕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3, 101동 1304호 (양산동, 한국아파트)			
						김균욱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55, 105동 105호 (연제동, 현대아파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김난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71, 103동 407호 (운림동, 라인아파트)			
						김대영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55, 304동 1006호 (운암동, 벽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			
						김승훈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30, 203동 602호 (문흥동, 중흥파크맨션)			
						김주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94번길 31, 103동 1901호 (신가동, 수완대성베르힐아파트)			
						김창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6번길 20-17, 104동 1403호 (소촌동, 대성베르힐)			
						김흥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 100, 302동 1904호 (백운동, 백운휴먼시아 3단지)			
						문금환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39(망월동)			
						문혜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94번길 31, 103동 2501호 (신가동, 수완대성베르힐아파트)			
						박정국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5-1, 302호(동명동)			
						박정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6번길 20-17, 102동 1502호 (소촌동, 대성베르힐)			
						배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207동 701호 (수원동, 수원2차 우미린아파트)			
						백민호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115, 302동 1102호 (진월동, 진아리채아파트)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가동)			
						변동훈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187번길 25(산수동)			
						양은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6번길 20-17, 101동 1401호 (소촌동, 대성베르힐)			
						양은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94번길 31, 103동 1901호 (신가동, 수완대성베르힐아파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오국열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169번길 20, 101동 804호 (운암동, 나산아파트)			
						이강임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181번길 20-1 (쌍촌동)			
						이창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019번길 16, 403호 (화정동)			
						임가영	광주광역시 북구 초당로7번길 19, 106동 101호 (매곡동, 대상베르힐)			
						임미르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94번길 31, 103동 2501호 (신기동, 수완대상베르힐아파트)			
						임예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94번길 31, 103동 1602호 (신기동, 수완대상베르힐아파트)			
						한상갑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94번길 31, 102동 1601호 (신기동, 수완대상베르힐아파트)			
						황우경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00, 104동 802호 (산수동, 광신프로그레스)			
						황은주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52, 801호(지산동, 제일맨션)			
						황희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6번길 20-17, 104동 602호 (소촌동, 대상베르힐)			
41	금곡리	산80-1	임	1,090	1,09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2	금곡리	산81	임	5,640	5,64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3	금곡리	산81-1	임	565	56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4	금곡리	산81-2	임	5,687	5,68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5	금곡리	산82-1	임	28,066	28,06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6	금곡리	산82-2	임	7,537	7,53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7	금곡리	산82-3	임	777	77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48	금곡리	신82-4	임	3,967	3,96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9	금곡리	신83	임	8,826	8,82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0	금곡리	신84	임	1,289	1,28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조미숙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96-1			
						조판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6번길 20, 901동 504호 (이매동, 이매촌)			
51	금곡리	신85	임	1,488	1,488	장갑봉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93			
						정동채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93			
						정갑선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97			
52	금곡리	신86	임	793	793	국(산림청)	-			
53	금곡리	751-3	전	850	85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54	금곡리	754	전	591	591	노진상	대동면 금곡리 688			
						노병순	대동면 금곡리 843			
						노경춘	대동면 금곡리 797			
55	금곡리	880	답	1,500	1,500	신유길	평택시 통복동 69-4			
56	금곡리	881-1	답	289	289	함평군	-			
57	금곡리	881-3	답	145	14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58	금곡리	881-4	답	832	83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59	금곡리	881-5	답	541	54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60	금곡리	882	답	96	9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61	금곡리	883	답	1,332	1,33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62	금곡리	884-2	답	185	185	정갑선	대동면 금곡리 697			
63	금곡리	884-3	답	2,532	1,43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64	금곡리	889	전	734	34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65	금곡리	890	전	456	456	정흥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읍 송정리 702			
						정봉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34			
66	금곡리	891	답	1,772	1,77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7	금곡리	892	답	754	75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8	금곡리	893	답	499	49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9	금곡리	894	전	529	52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0	금곡리	895	전	1,435	1,43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1	금곡리	896-1	임	1,226	1,226	정봉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92			
72	금곡리	896-2	전	1,226	1,226	정봉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92			
73	금곡리	897	전	1,544	1,544	정흥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리 702			
						정봉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34			
74	금곡리	898	전	169	169	정갑선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97			
75	금곡리	899	전	1,045	1,04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6	금곡리	900	전	770	77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7	금곡리	901	전	1,537	1,53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8	금곡리	901-1	전	2,787	2,78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9	금곡리	902	전	493	49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0	금곡리	903	유	2,152	2,15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1	금곡리	904	전	324	32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2	금곡리	905	전	1,402	1,40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3	금곡리	906	전	783	78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4	금곡리	907	유	714	71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5	금곡리	908-1	임	400	40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86	금곡리	908-2	전	945	94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7	금곡리	909	전	1,362	1,36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8	금곡리	910	전	641	64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9	금곡리	911	답	1,742	1,74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0	금곡리	912	전	463	46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1	금곡리	913	유	7,867	7,867	함평군	-			
92	금곡리	914-8	답	145	14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3	금곡리	917	전	382	382	노병순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843			
						노타금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98			
						노용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842			
94	금곡리	918	대	168	168	노용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842			
						노타금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98			
						노병순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843			
95	금곡리	927	전	277	27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6	금곡리	928	전	2,331	2,33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7	금곡리	929	답	483	48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8	금곡리	930	전	833	83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9	금곡리	931	전	1,874	1,87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0	금곡리	932	전	1,468	1,468	정찬득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97			
101	금곡리	933	답	2,010	2,01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2	금곡리	934	답	797	79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3	금곡리	935	전	1,084	1,08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4	금곡리	936	답	2,090	2,09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105	금곡리	945	전	1,131	1,13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6	금곡리	946-1	전	622	62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7	금곡리	946-2	전	654	65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8	금곡리	947	전	988	98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9	금곡리	947-1	전	1,018	1,01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0	금곡리	948	전	585	58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1	금곡리	949	전	2,268	2,26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2	금곡리	950	전	1,898	1,89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3	금곡리	951	답	1,950	1,95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4	금곡리	952	전	493	49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5	금곡리	953	전	268	26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6	금곡리	954	전	73	7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7	금곡리	955	답	654	65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8	금곡리	966-6	구	2,607	2,607	국(국토교통부)	-			
119	금곡리	966-12	구	1,743	1,743	국(국토교통부)	-			
120	금곡리	989	도	321	321	국(국토교통부)	-			
121	금곡리	990	도	132	132	국(국토교통부)	-			
122	금곡리	992	도	463	463	국(국토교통부)	-			
123	금곡리	992-2	도	183	183	국(국토교통부)	-			
124	금곡리	1023-1	답	1,251	1,25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5	금곡리	1023-2	답	1,716	1,71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6	금곡리	1023-3	답	2,241	2,24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127	금곡리	1023-4	답	2,017	2,01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8	금곡리	1023-5	답	1,503	1,50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9	금곡리	1023-6	답	1,416	1,41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30	금곡리	1023-7	답	682	68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31	금곡리	1023-8	답	917	917	노병순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843			
						노타금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98			
						노용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842			
132	금곡리	1023-9	답	1,486	1,48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33	금곡리	1048	구	2,723	2,723	국(농림축산식품부)	-			
134	금곡리	1049	도	3,310	1,427	국(농림축산식품부)	-			
135	금곡리	1051	구	21,959	1,481	국(농림축산식품부)	-			
금곡리 소계(135필지)				576,359	551,172					
1	월송리	산19-9	임	7,097	7,09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	월송리	산19-13	임	545	54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	월송리	산20	임	7,240	7,240	장윤정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6, 101동 1404호 (오전동, 성원1차이화아파트)			
						장윤석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6, 101동 1404호 (오전동, 성원1차이화아파트)			
4	월송리	산20-1	임	7,239	7,239	장윤정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6, 101동1404호 (오전동, 성원1차이화아파트)			
						장윤석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6, 101동 1404호 (오전동, 성원1차이화아파트)			
5	월송리	산22	임	4,959	4,95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	월송리	산23	임	26,479	26,47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	월송리	산24	임	26,083	26,08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8	월송리	산25	임	12,595	12,59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	월송리	산26-1	임	85,444	85,44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	월송리	산27	임	5,068	5,06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	월송리	산59-1	임	5,653	5,65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	월송리	산59-4	임	3,372	3,37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3	월송리	산60	임	19,591	19,59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4	월송리	산61	임	19,886	19,88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5	월송리	산62-4	임	5,365	5,36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6	월송리	산65-1	구	37	37	국(농림축산식품부)	-			
17	월송리	산67-1	임	32,926	32,92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8	월송리	산67-2	임	39,905	39,90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9	월송리	산67-3	임	11,038	11,03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0	월송리	산68	임	18,248	18,248	대선이앤씨유한회사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성길 71			
21	월송리	산69	임	13,686	13,68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2	월송리	산70-1	임	28,165	28,16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3	월송리	산70-2	임	29,455	29,45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4	월송리	산71	임	270	270	에이치케이리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63-2			
25	월송리	산72-1	임	5,267	5,26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6	월송리	산74	임	11,202	11,20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7	월송리	산75	임	5,851	5,85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8	월송리	산76	임	89	89	지길상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54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29	월송리	산77-1	임	17,850	17,85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0	월송리	산77-3	임	12,099	12,099	신명진	광주광역시 서구 송풍로 30, 103동 1103호(풍암동, 에스케이뉴)			
31	월송리	산78-1	임	10,886	10,88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2	월송리	산107	구	694	694	국(농림축산식품부)	-			
33	월송리	산108	도	298	298	국(국토교통부)	-			
34	월송리	122-2	전	712	712	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63-2	압류	전라남도 함평군	
35	월송리	123-1	전	105	105	이동영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65			
36	월송리	123-3	전	5,224	5,22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7	월송리	123-8	전	689	68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8	월송리	123-9	전	175	17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9	월송리	125	전	319	31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0	월송리	125-1	전	435	43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1	월송리	126	전	1,752	1,75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2	월송리	126-1	전	1,342	1,34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3	월송리	126-2	전	951	95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4	월송리	129	답	1,886	1,88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5	월송리	129-1	전	729	72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6	월송리	130	전	922	922	이만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97-10 1층 에이-203			
47	월송리	131	전	1,660	1,66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8	월송리	132-1	답	274	274	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63-2	압류	전라남도 함평군	
49	월송리	132-2	전	2,502	2,50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50	월송리	133	전	823	823	대선이앤씨유한회사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성길 71			
51	월송리	134	전	483	48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2	월송리	135	전	1,230	1,23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3	월송리	136	전	1,132	1,13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4	월송리	137	답	236	23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5	월송리	150	답	1,181	1,18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6	월송리	152-1	전	1,121	1,121	신명진	광주광역시 서구 송풍로 30, 103동 1103호(풍암동, 에스케이뷰)			
57	월송리	269	답	41	4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8	월송리	270	답	143	14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9	월송리	271	답	723	723	함평군	-			
60	월송리	272-1	전	909	90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1	월송리	272-2	전	601	601	함평군	-			
62	월송리	272-3	전	939	939	국(기획재정부)	-			
63	월송리	290	전	2,828	2,82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4	월송리	350	전	1,397	1,39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5	월송리	350-3	전	10,809	10,80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6	월송리	351	전	2,033	2,03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7	월송리	353	전	2,665	2,66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8	월송리	353-1	전	2,066	2,06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9	월송리	353-2	전	1,550	1,55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0	월송리	844-7	천	356	356	국(국토교통부)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71	월송리	844-8	천	178	178	국(국토교통부)	-			
72	월송리	932-1	답	1,496	1,496	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63-2	압류	전라남도 함평군	
73	월송리	933-1	답	1,895	1,895	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63-2	압류	전라남도 함평군	
74	월송리	933-2	답	1,647	1,647	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63-2	압류	전라남도	
75	월송리	933-3	답	1,506	1,50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76	월송리	933-4	답	1,182	1,182	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63-2	압류	전라남도 함평군	
77	월송리	933-5	답	566	56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8	월송리	933-6	답	2,799	2,79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9	월송리	943-1	답	1,840	1,84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0	월송리	943-2	답	1,444	1,44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1	월송리	949-1	답	1,442	1,44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2	월송리	949-2	답	2,300	2,300	오필수	전남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492			
						오정선	전남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27			
						오관수	전남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55			
83	월송리	949-3	답	1,755	1,75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84	월송리	949-4	답	2,029	2,029	장경섭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사량길 43			
85	월송리	949-5	답	1,989	1,98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86	월송리	950-1	답	1,677	1,67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87	월송리	950-2	답	1,340	1,34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88	월송리	950-3	답	1,090	1,09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89	월송리	950-4	답	1,454	1,45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90	월송리	950-5	답	1,302	1,302	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43-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91	월송리	950-6	답	1,580	1,580	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43-2	압류	전라남도 함평군	
92	월송리	950-7	답	1,916	1,91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이노덕	전남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39			
93	월송리	950-8	답	2,039	2,039	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43-2	압류	전라남도 함평군	
94	월송리	950-9	답	2,154	2,15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5	월송리	950-10	답	1,956	1,95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6	월송리	967	도	4,046	159	국(농림축산식품부)	-			
97	월송리	969	도	888	888	국(농림축산식품부)	-			
98	월송리	970	구	898	898	국(농림축산식품부)	-			
99	월송리	971	구	1,388	1,388	국(농림축산식품부)	-			
100	월송리	972	천	29,069	3,344	국(국토교통부)	-			
101	월송리	975	구	6,285	354	국(농림축산식품부)	-			
102	월송리	977	도	1,294	681	국(농림축산식품부)	-			
103	월송리	978	구	3,111	3,111	국(농림축산식품부)	-			
104	월송리	987	도	2,600	1,705	국(농림축산식품부)	-			
105	월송리	994-1	답	1,376.4	1,376.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6	월송리	994-2	답	1,200.7	1,200.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7	월송리	994-3	답	1,039	1,03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8	월송리	995-1	답	2,562.7	2,562.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9	월송리	995-2	답	1,461.6	1,461.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0	월송리	995-3	답	1,487.6	1,487.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1	월송리	995-4	답	1,757.3	1,757.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2	월송리	995-5	답	2,035.9	2,035.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3	월송리	995-6	답	1,048.5	1,048.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114	월송리	995-7	답	870.2	870.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5	월송리	995-8	답	1,305.2	1,305.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6	월송리	995-9	답	755.5	755.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7	월송리	996-1	답	2,025.1	2,025.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8	월송리	996-2	답	953.3	953.3	홍종희	광주시 광산구 봉양면 동림리 44			
						홍충희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38			
						홍봉희	광주시 남구 봉선동 455-22			
						홍주형	부산광역시 사하구 송학로 131번길 39, 6동 206호 (당리동, 에덴동산타운)			
119	월송리	996-3	답	913.9	913.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0	월송리	996-4	답	1,598.1	1,598.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1	월송리	996-5	답	1,361.3	1,361.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2	월송리	996-6	답	1,641.1	1,641.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3	월송리	997-1	답	859.8	859.8	국(기획재정부)	-			
124	월송리	997-2	답	618.1	618.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5	월송리	998-1	답	943.3	943.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6	월송리	998-2	답	1,367.8	1,367.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7	월송리	998-3	답	1,611.1	1,611.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8	월송리	998-4	답	1,390.8	1,390.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9	월송리	998-5	답	1,020.4	1,020.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30	월송리	998-6	답	672.8	672.8	박윤성	-			
131	월송리	1000	구	5,352	3,624	국(농림축산식품부)	-			
132	월송리	1001	구	1,311.4	1,311.4	국(농림축산식품부)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133	월송리	1002	도	3,788.2	1,921	국(농림축산식품부)	-			
134	월송리	1003	구	2,202	2,202	국(농림축산식품부)	-			
135	월송리	1004	도	2,988.8	1,647	국(농림축산식품부)	-			
136	월송리	1005	구	1,580.4	1,580.4	국(농림축산식품부)	-			
월송리 소계(136필지)				668,780.3	626,792.3					
1	백호리	64-1	임	2,228	2,22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	백호리	64-2	임	2,350	2,35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	백호리	77	답	101	10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	백호리	78	전	1,669	1,66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	백호리	79	답	1,111	1,11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	백호리	80	답	883	88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	백호리	81	전	1,395	1,39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	백호리	82	임	3,260	3,26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	백호리	82-1	임	450	450	서상봉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22			
10	백호리	82-2	전	1,147	1,14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	백호리	83	전	1,759	1,75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2	백호리	84	전	2,479	2,47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3	백호리	88	전	1,857	1,857	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63-2	압류	전라남도 함평군	
14	백호리	89	전	1,339	1,33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5	백호리	90	전	1,177	1,17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6	백호리	99	답	1,039	1,03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7	백호리	100	답	261	26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18	백호리	100-1	답	704	70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9	백호리	101	전	1,061	1,06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0	백호리	101-1	전	3,521	3,52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1	백호리	102	전	512	51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2	백호리	102-1	전	1,074	1,07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3	백호리	103	전	658	65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4	백호리	107-1	임	400	400	국(기획재정부)	-			
25	백호리	107-2	전	340	340	국(기획재정부)	-			
26	백호리	108-1	임	595	595	국(기획재정부)	-			
27	백호리	108-2	전	598	598	국(기획재정부)	-			
28	백호리	109	전	1,584	1,58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29	백호리	111	대	836	83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0	백호리	112	전	1,593	1,59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1	백호리	113	전	1,646	1,64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2	백호리	114	전	281	281	국(기획재정부)	-			
33	백호리	115	답	106	106	신명진	광주광역시 서구 송풍로 30, 103동 1103호(풍암동, 에스케이뉴)			
34	백호리	116-1	답	636	63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5	백호리	121	전	425	42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6	백호리	산128	임	255	255	김봉원	-			
37	백호리	산129	임	16,562	16,56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8	백호리	산130	임	14,244	14,24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39	백호리	산131-1	임	91,479	91,47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40	백호리	산132	임	1,872	1,87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1	백호리	산133	임	198	19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2	백호리	산134	임	198	19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3	백호리	산135	임	344	34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4	백호리	산136-3	임	27,006	27,00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5	백호리	산137	임	610	610	국(산림청)	-			
46	백호리	산138	임	2,658	2,65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7	백호리	산139	임	8,498	8,49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48	백호리	산139-1	도	298	298	국(국토교통부)	-			
49	백호리	산140	임	8,740	8,74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0	백호리	140-1	전	325	325	박영금	-			
51	백호리	산140-1	임	359	35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2	백호리	산144	임	46,522	46,52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3	백호리	144-1	전	14,759	14,75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4	백호리	145	전	286	286	조선호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70-45	근저당권	송현숙	
								가처분	한국자산 관리공사	
55	백호리	산145-1	임	1488	1488	국(산림청)	-			
56	백호리	산146	임	44,260	44,26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7	백호리	산147	임	3372	3,37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8	백호리	산148	임	14,479	14,47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59	백호리	산148-1	도	265	265	국(국토교통부)	-			
60	백호리	산149	임	21,620	21,62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61	백호리	산150	임	10,711	10,711	서남수	나산면 삼축리 952			
						서미석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25			
62	백호리	산152	임	11,405	11,40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3	백호리	산153	임	2,975	2,97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4	백호리	산154-1	임	14,578	14,57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5	백호리	산154-3	임	2,182	2,18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6	백호리	247	전	1,603	1,60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67	백호리	925	도	192	192	국(국토교통부)	-			
68	백호리	926-7	구	126	126	국(농림축산식품부)	-			
69	백호리	996-1	답	2,610	2,61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0	백호리	996-2	답	2,307	2,30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1	백호리	996-3	답	1,126	1,12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2	백호리	996-4	답	1,418	1,41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3	백호리	996-5	답	1,696	1,69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4	백호리	996-6	답	1,274	1,27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5	백호리	996-7	답	1,480	1,48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6	백호리	996-8	답	1,916	1,91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7	백호리	997-1	답	1,308	1,30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8	백호리	997-2	답	1,925	1,925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79	백호리	997-3	답	2,297	2,29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0	백호리	997-4	답	1383	138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81	백호리	997-5	답	1110	1110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2	백호리	997-6	답	3094	309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3	백호리	997-7	답	2944	294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4	백호리	998-1	답	1853	185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5	백호리	998-2	답	1976	197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86	백호리	1022	도	1226	1226	국(농림축산식품부)	-			
87	백호리	1023	구	20737	7689	국(농림축산식품부)	-			
88	백호리	1024	도	1840	1840	국(농림축산식품부)	-			
89	백호리	1025	도	10207	1430	국(농림축산식품부)	-			
90	백호리	1045-1	답	1801.9	1801.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1	백호리	1045-2	답	1085.8	1085.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2	백호리	1045-3	답	1166.9	1166.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3	백호리	1045-4	답	1963.7	1963.7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4	백호리	1045-5	답	1767.1	1767.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5	백호리	1045-6	답	1991	199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6	백호리	1045-7	답	2321.4	2321.4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7	백호리	1045-8	답	1572.1	1572.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8	백호리	1045-9	답	1381.1	1381.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99	백호리	1045-10	답	2593.21	2593.21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0	백호리	1045-11	답	2002.8	2002.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1	백호리	1046	구	3126.1	3126.1	국(농림축산식품부)	-			
102	백호리	1047	구	258.1	258.1	국(농림축산식품부)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103	백호리	1048	도	1155.7	715	국(농림축산식품부)	-			
104	백호리	1052-3	답	1719.8	1719.8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5	백호리	1052-4	답	1902.2	1902.2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6	백호리	1052-5	답	1024.6	1024.6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7	백호리	1052-6	답	849.6	849.6	박영금	-			
108	백호리	1052-7	답	1,098.3	1,098.3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09	백호리	1052-8	답	1,637.9	1,637.9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 (수기동)			
110	백호리	1053	도	3,120.9	1,186.0	국(농림축산식품부)	-			
111	백호리	1054	구	2,284.9	1,248.0	국(농림축산식품부)	-			
112	백호리	1055	구	4,511.2	1,208.0	국(농림축산식품부)	-			
백호리 소계(112필지)				513,607.3	485,066.6					

진도군 고시 제2019-51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진도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40-38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11. 7.

진도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1-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2-34호선) 시설사업
 - 명 칭 : 군강공원~노인복지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5,015㎡
 - 규 모
 - 도로연장 : 471m
 - 도 로 폭 : 소로 8.0m
4.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성내리64-1)
 - 성 명 : 진 도 군 수 (415-83-0274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인가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0. 12. 31. (착수일로부터 3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다음
가. 토지 총괄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41	5,015	16	982.6	7	660.6	18	3,371.8	
답	2	130					2	130	
도	9	1,382.6			7	660.6	2	722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대	25	2,768.4	14	900.6			11	1,867.8	
전	5	734	2	82			3	652	

나. 지장물 조서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한 전 주	EA	7	
통 신 주	EA	8	
건 축 물	동	31	

7. 자금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 조달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2017	2018	2019	2020	
국 비	-	-	-	-	-	
지방비(도·군비)	2,900,000	250,000	150,000	2,500,000	-	

나. 년차별 투자 계획

(천원)

구 분	년 차 별					비고
	계	2017	2018	2019	2020	
공 사 비	1,600,000	80,000	-	1,520,000	1,300,000	
용 지 보 상 비	1,300,000	170,000	150,000	980,000	-	
기 타	-	-	-	-	-	

다. 시설별 투자 계획

(천원)

구 분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 총 공 사 비			1,600,000	백단위 이하 절 사
1. 토목 공사비	식	1	450,000	
2. 관급자재대	식	1	250,000	
3. 기타 부대공	식	1	200,000	
4. 폐기물처리비	식	1	700,000	

8. 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조서 총괄

구 분		계	답	전	대	도로	비고
계	필지수	25	2	3	11	9	
	편입면적	4,032.4	130	652	1,867.8	1,382.6	
진도군	필지수	18	2	3	11	2	
	편입면적	3,371.8	130	652	1,867.8	722	
건설부	필지수	7				7	
	편입면적	660.6				660.6	

나. 대체 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 방법

1) 시행할 자 : 진도군수

2) 시행 방법 : 진도읍 군강공원~노인복지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다. 대체 시설을 관리할 자 : 진도군수

라.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 “용지조서 참조”

9. 사업 시행 계획

가. 사업시행

○ 모든 공사는 실시설계도면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 사업의 시행은 예정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 기타 시설계획은 관련법령위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 시공시 건설관리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현장 감리 감독토록 하여 견실 시공한다.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시공능력이 있는 시공사로 선정하여 시공한다.

나. 공사설계도서 : 별첨 설계 도서 참조

10.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 계획

가.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자격이 인정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 가격으로 산정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의거 협의 매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때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한다.

11.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가. 공시 송달 대상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주가 불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공시 송달 방법 : 군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 송달함.

토지 편입 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 명	비고
1	진도읍 성내리	1-1	도로	339	339	-	진도군	
2	진도읍 성내리	3-4	대	332	85	-	진도군	
3	진도읍 성내리	4-5	답	122	122	-	진도군	
4	진도읍 성내리	4-6	답	50	8	-	진도군	
5	진도읍 성내리	5-4	전	46	46	-	진도군	
6	진도읍 성내리	5-5	전	133	133	-	진도군	
7	진도읍 성내리	7-3	대	566	120	-	진도군	
8	진도읍 성내리	7-13	대	294	294	-	진도군	
9	진도읍 성내리	7-14	대	209	209	-	진도군	
10	진도읍 성내리	7-15	대	527	527	-	진도군	
11	진도읍 성내리	12-4	전	473	473	-	진도군	
12	진도읍 성내리	17-16	대	80	80	-	진도군	
13	진도읍 성내리	17-17	대	4	4	-	진도군	
14	진도읍 성내리	17-11	대	57	57	-	진도군	
15	진도읍 성내리	18-4	대	80	80	-	진도군	
16	진도읍 성내리	22-11	대	3,621.7	66.5	-	진도군	
17	진도읍 성내리	22-63	전	79	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	
18	진도읍 성내리	22-82	대	286.7	6	진도군 고군면 향동길	김*미	
19	진도읍 성내리	22-91	대	313.1	110.5	진도읍 쌍정리	양*주	
20	진도읍 성내리	22-99	대	345.3	345.3	-	진도군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 명	비고
21	진도읍 성내리	24-1	대	220.3	60.8	진도읍 성내리	박*덕	
22	진도읍 성내리	25-1	대	255	165.1	진도읍 성내리	한*남	
23	진도읍 성내리	25-2	도로	81.8	81.8	-	국(건설부)	
24	진도읍 성내리	25-4	대	101.9	26.2	진도읍 남동리	김*을 외1인	고*순
25	진도읍 성내리	26-1	대	309.3	16.2	진도읍 성내리	김*림	
26	진도읍 성내리	26-2	대	238.9	19.7	진도읍 성내리	김*을	
27	진도읍 성내리	27-1	대	225.2	66.6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기골로7	이*연	
28	진도읍 성내리	27-4	대	298.3	48.8	서울 광진구 중곡동	박*심	
29	진도읍 성내리	27-5	대	492.1	99.3	진도군 임회면 아리랑길	이*일	
30	진도읍 성내리	28-19	대	33	27		홍*오	미등기
31	진도읍 성내리	28-21	대	697.3	124.1	진도읍 교동6길	하*자	
32	진도읍 성내리	28-33	대	368	77.9	진도읍 동외리	이*애	
33	진도읍 성내리	28-44	대	200.9	52.4	진도읍 성내리	백*선	
34	진도읍 성내리	69	도로	2,612	95	-	국(건설부)	
35	진도읍 성내리	72-1	도로	48	27	-	국(건설부)	
36	진도읍 성내리	72-4	도로	122	78	-	국(건설부)	
37	진도읍 성내리	72-7	도로	115	52	-	국(건설부)	
38	진도읍 성내리	72-15	도로	303.8	303.8	-	국(건설부)	
39	진도읍 성내리	22-67	전	3	3	진도읍 성내리	최*대	미등기
40	진도읍 교동리	37-1	도로	383	383	-	진도군	
41	진도읍 교동리	905-4	도로	126	23	-	국(건설부)	

지장물 조서

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개소(EA)	소유자 주소	성명
1	진도읍 성내리	22-91	주택	목조기와위강판	135	진도읍 쌍정리	양*주
			창고	조적스레트	30		
			화장실 및 창고	조적슬라브	9		
			차양	철파이프 스레트	6.2		
			담장	돌담	10		
				돌담위기와	40		
				시멘트블록	46.45		
			세면장		1		
			장독대		1		
			바닥	쇄석	1		
			수도미터		1		
			정화조		1		
			대문	철제대문	1		
			문주	조적조	2		
			화단		1		
				동백나무	1		
				감나무	3		
				정원수	1		
				유자나무	1		
				후박나무	1		
				비파나무	1		
				장미	1		
			화단	자연석	1		
				동백나무	1		
				모란	7		
				종려나무	1		
			화단	애기사과	1		
				살구나무	1		
				비파나무	1		

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개소(EA)	소유자 주소	성명
2	진도읍 성내리	22-82	담장	적벽돌	3.6	고군면 향동길	김*미
				적벽돌 및 주물	8		
			대문	철제대문	1		
			문주	적벽돌	2		
3	진도읍 성내리	22-100	주택	목조기와	9.9	-	미등기
			화단	시멘트블록	1		
				석류나무	1		
				사철나무	1		
				광나무	1		
4	진도읍 성내리	24-1	다용도실및화장실	조적스레트	5.6	진도읍 성내리	박*덕
			다용도실	조적슬라브	1.21		
			계단		2		
			창고 및 화장실	조적슬라브	22.7		
			문간	조적스레트	8.75		
			대문	철제	1		
			차양	철파이프 스레트	33.33		
			담장	시멘트블록	10.8		
			담장	돌담장	42.5		
			빨래건조대		2		
			수도미터		1		
			정화조		1		
			계단		2		
			감나무		2		
			석류나무		1		
5	진도읍 성내리	25-4	창고	조적스레트	32.34	-	미등기
			가추	철파이프 스레트	6.6		
			토방	콘크리트	6.1		
			담장	시멘트블록	19.8		
			수목	감나무	1		

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개소(EA)	소유자 주소	성명
6	진도읍 성내리	26-2	담장	시멘트블록	7.5	진도읍 성내리	김*울
			대문	철제	1		
			바닥	콘크리트	20		
			수도계량기		1		
			화단	자연석	1		
				동백나무	1		
				감나무	2		
				장미	1		
7	진도읍 성내리	25-1	주택	조적스레트 위 강판	69.16	진도읍 성내리	한*국
			담장	시멘트블록	53.1		
			대문	철제	1		
			문주	적벽돌	2		
			수도미터		1		
			정화조		1		
			화단	콘크리트	1		
				자연석	1		
				상수리나무	1		
				살구나무	1		
				누룩나무	1		
				동백나무	1		
				감나무	1		
				멀구슬나무	2		
				후박나무	1		
				보리수나무	1		
8	진도읍 성내리	27-4	주택	목조스레트	40	서울 광진구 중곡동	박*심
			욕실 및 화장실	조적스레트	6		
			기초	목조스레트	6		
10	진도읍 성내리	26-1	담장	시멘트블록	8.8	진도읍 성내리	김*림
				적벽돌	7.2		
			대문	철제	2		

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개수(EA)	소유자 주소	성명
			문주	적벽돌	3		
			전기계량기		2		
			바닥	콘크리트	20		
11	진도읍 성내리	27-5	다용도실	조적스레트	6.84	임회면 아리랑길	이*일
			주택	조적스레트	28		
			주택	조적스레트	24.5		
			다용도실	조립식판넬위스레트	10.5		
			세탁실 및 세면장	조적스레트	2.72		
			문간	목조스레트	7.5		
			대문	철재	1		
			문주	조적조	2		
			바닥	콘크리트	12		
			차양	철파이프 스텔트	10		
			수도미터		1		
			정화조		1		
			세면장		1		
12	진도읍 성내리	27-1	주택	조적및조립식 판넬스레트	86.4	충북 영동군 영동읍 기골로	이*연
			가추	철파이프 스레트 및 선라이트	18		
			담장	시멘트블록	103.71		
			대문	철제대문	1		
			문주	조적식	2		
			바닥		5		
			수도미터		1		
			정화조		1		
			오동나무		1		
			보리수		5		
			장미		1		
			담쟁이		4		
			벽돌구조물		1		

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개소(EA)	소유자 주소	성명
13	진도읍 성내리	28-44	화장실	조적슬라브	1.44	진도읍 성내리	백*선
			담장	시멘트블록	22		
			수도미터		1		
			정화조		1		
			대문	철제슬라브	1		
			문주	적벽돌	2		
			바닥	콘크리트	20		
			수도꼭지		1		
			화단	자연석	1		
				장미	1		
14	진도읍 성내리	28-33	화장실	조적슬라브	3.08	진도읍 성내리	이*애
			담장	시멘트블록	28		
			대문	철제슬라브	1		
			문주	적벽돌	2		
			바닥	콘크리트	10		
			수도미터		1		
			정화조		1		
			기름탱크	철재	1		
			화단	자연석	1		
				회양목	7		
				향나무	1		
				동백나무	1		
				철쭉	1		
				굴나무	1		
				광나무	2		
				잔디	22		
15	진도읍성내리	28-21	담장	시멘트블록	45	진도읍 교동리	하*자
			대문	철제	1		
			문주	조적조	2		
			세면장		1		
			바닥	콘크리트	20		

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개소(EA)	소유자 주소	성 명
			수도미터		1		
			정화조		1		
			울타리	철망 및 대나무	2		
			화단	자연석	1		
				비파나무	1		
				아로니아	2		
				블루베리	2		
				천년초	5		
				무화과	9		
				매실나무	7		
			화단	종려	1		
				감나무	19		
				대추나무	2		
				석류나무	2		
				자두나무	3		
				복숭아나무	1		
				체리나무	9		
				뽕나무	3		
				오가피나무	3		
				치자나무	1		
				소사나무	1		
				어성초	7.5		
				천리향	1		

신안군 고시 제2019-82호

신안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편입면적 정정)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59(2019.8.8.)호로 고시된 압해읍 복룡리 산283-27번지 일원의 신안 군 계획시설(도로 : 소로 1-8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편입면적 정정)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7.

신안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산283-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 1-84호선)사업
 - 명 칭 : 압해 복룡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8,78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신안군수
 - 주 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도면 : 게재생략

※ 기타 관련서류는 신안군청 지역경제과(☎061-240-83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정정),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면적(㎡))
				대장	편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압해읍 복룡리	1185-15	전	518	345	박*호	압해읍 복룡리 1225	-	-	-	
2	〃	1185-22	전	3,425	37	신안군		-	-	-	
3	〃	1185-41	전	9	9	〃		-	-	-	
4	〃	1185-42	전	57	57	〃		-	-	-	
5	〃	1185-43	전	335	190	박*호	압해읍 복룡리 1225	-	-	-	
6	〃	1185-44	전	824	487	신안군		-	-	-	
7	〃	1185-47	전	162	113	정*환	압해읍 남세촌길 74	-	-	-	
8	〃	1185-49	전	148	98	김*초 외 2인	압해읍 남세촌길 74	-	-	-	
9	〃	1221-11	전	178	71	신안군		-	-	-	
10	〃	1222-23	전	358	67	장*석	압해읍 남세촌길 55	나주시 그린로20	한국농어촌 공사	근저당	
11	〃	1222-24	전	46	29	장*석	압해읍 복룡리 942-8	남세촌길 75	압해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12	〃	1223-9	과	1,211	883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 그린로 20	-	-	-	
13	〃	1223-11	전	320	87	박*오	압해읍 복룡리 1225	-	-	-	
14	〃	1223-12	전	136	127	박*오	압해읍 복룡리 1225	-	-	-	
15	〃	1223-13	과	416	104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 그린로 20	-	-	-	
16	〃	1223-14	임	75	11	정*환	압해읍 남세촌길 74	-	-	-	
17	〃	1224-11	전	641	431	김*희 외 2인	압해읍 복룡리 539	-	-	-	
18	〃	1224-13	구	76	34	국(건설부)		-	-	-	
19	〃	1224-14	잡	3,092	3,092	국(재정경제원)		-	-	-	당초 1,472㎡
20	〃	1224-16	임	1,228	151	신안군		-	-	-	당초 1,051㎡
21	〃	1224-17	임	1,150	168	신안군		-	-	-	당초 888㎡
22	〃	1226-8	전	4	4	국(기획재정부)		-	-	-	
23	〃	1226-9	도	1,033	127	국(국토교통부)		-	-	-	
24	〃	산272-6	임	126	79	천안전씨 태환파문중	압해읍 복룡리 46	-	-	-	
25	〃	산280-10	임	253	144	신안군		-	-	-	
26	〃	산280-9	임	141	83	김*희 외 2인	압해읍 복룡리 539	-	-	-	
27	〃	산282-5	임	864	672	신안군		-	-	-	
28	〃	산283-26	임	1,199	986	신안군		-	-	-	
29	〃	산283-27	임	108	98	신안군		-	-	-	
합 계(29필지)				18,133	8,784						

신안군 고시 제2019-83호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7.

신안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6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 명 칭 : 안좌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111,16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신안군수
 - 주 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 2016. 10. 06.
 - 준공예정년월일 : 2022. 12. 31.(당초:2019.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게재생략
7. 도면 : 게재생략
8. 기타 관련서류 및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맞예술평화과(☎061-240-8042)로 문의바랍니다.

신안군 고시 제2019-84호

2025년 신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2025년 신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9-347호, 2019.10.31)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 신안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2019. 11. 7.

신안군수

1. 2025년 신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주요내용
 - 계 획 명 : 2025년 신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계획범위 : 신안군 행정구역 전역 (655.569km²)
2. 2025년 신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주요내용
 - 용도지역·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군계획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다음
4. 신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면 : 게재생략
5. 관계도서는 신안군 지역경제과(061-240-84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신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53,986,101	증1,582,654	655,568,755	100.00	용도지역 미지정지 면적증가 (1,582,654㎡)
도 시 지 역	계		3,720,000	증5,281	3,725,281	0.57	
	주거 지역	소 계	293,303	-	293,303	0.0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9,121	-	109,121	0.02	
		제2종일반주거지역	154,302	-	154,302	0.0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9,880	-	29,880	-	
	상업 지역	소 계	62,190	-	62,190	0.01	
		일반상업지역	62,190	-	62,190	0.01	
		근린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53,500	-	53,500	0.01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53,500	-	53,500	0.01	
	녹지 지역	소 계	3,311,007	증5,281	3,316,288	0.51	
		보전녹지지역	139,700	-	139,700	0.02	
		생산녹지지역	373,200	증3,119	376,319	0.06	
		자연녹지지역	2,798,107	증2,162	2,800,269	0.43	
비 도 시 지 역	계		650,266,101	증1,577,373	651,843,474	99.43	
	관리 지역	소 계	361,122,123	증1,247,014	362,369,137	55.28	
		보전관리지역	108,199,029	증233,397	108,432,426	16.54	
		생산관리지역	103,975,482	증181,437	104,156,919	15.89	
		계획관리지역	148,947,612	증832,180	149,779,792	22.85	
	농림지역		228,397,949	증34,560	228,432,509	34.84	
	자연환경보전지역		60,746,029	증295,799	61,041,828	9.31	

주1) 기정면적은 신안군 고시 제2017-48호(2017.08.24.) 고시면적을 반영함

주2) 변경면적은 용도지역 미지정지 1,582,654㎡를 포함한 면적임.

나. 행정구역별 지정내역(변경 후)

구 분	합 계(㎡)	면 적(㎡)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합 계	655,568,755	79,743,999	33,785,062	47,230,636	52,862,317	51,630,524	55,369,240	48,553,709
주거지역	293,303	293,303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9,121	109,121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4,302	154,302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준주거지역	29,880	29,880	-	-	-	-	-	-
상업지역	62,190	62,190	-	-	-	-	-	-
일반상업지역	62,190	62,190	-	-	-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공업지역	53,500	53,500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	-
준공업지역	53,500	53,500	-	-	-	-	-	-
녹지지역	3,316,288	3,316,288	-	-	-	-	-	-
보전녹지지역	139,700	139,700	-	-	-	-	-	-
생산녹지지역	376,319	376,319	-	-	-	-	-	-
자연녹지지역	2,800,269	2,800,269	-	-	-	-	-	-
관리지역	362,369,137	46,058,332	23,687,099	22,996,166	29,118,264	30,253,927	21,916,058	5,404,498
보전관리지역	108,432,426	19,561,861	4,542,826	8,560,529	15,495,446	7,140,184	6,266,499	871,697
생산관리지역	104,156,919	9,872,858	6,176,839	4,338,784	5,922,444	9,739,942	11,559,488	206,934
계획관리지역	149,779,792	16,623,613	12,967,434	10,096,853	7,700,374	13,373,801	4,090,071	4,325,867
농림지역	228,432,509	29,567,386	9,592,963	24,019,470	23,744,053	15,590,159	15,546,743	13,752,178
자연환경보전지역	61,041,828	393,000	505,000	215,000	-	5,786,438	17,906,439	29,397,033

구 분	합 계(㎡)	면 적(㎡)							비고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압해읍	
합 계	655,568,755	34,660,330	33,267,708	29,219,097	59,918,042	18,415,366	43,284,728	67,627,997	
주거지역	293,303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9,121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4,302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준주거지역	29,880	-	-	-	-	-	-	-	
상업지역	62,190	-	-	-	-	-	-	-	
일반상업지역	62,190	-	-	-	-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공업지역	53,500	-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	-	
준공업지역	53,500	-	-	-	-	-	-	-	
녹지지역	3,316,288	-	-	-	-	-	-	-	
보전녹지지역	139,700	-	-	-	-	-	-	-	
생산녹지지역	376,319	-	-	-	-	-	-	-	
자연녹지지역	2,800,269	-	-	-	-	-	-	-	
관리지역	362,369,137	21,293,540	22,380,049	20,440,701	37,406,907	12,673,262	22,517,401	46,222,933	
보전관리지역	108,432,426	5,320,110	5,427,268	4,525,027	8,865,069	1,469,098	6,946,505	13,440,307	
생산관리지역	104,156,919	11,312,143	973,267	9,689,391	13,226,769	4,649,777	6,284,198	10,204,085	
계획관리지역	149,779,792	4,661,287	15,979,514	6,226,283	15,315,069	6,554,387	9,286,698	22,578,541	
농림지역	228,432,509	6,527,872	10,887,659	8,778,396	22,511,135	5,742,104	20,767,327	21,405,064	
자연환경보전지역	61,041,828	6,838,918	-	-	-	-	-	-	

다.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1) 용도지역 재정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도1	증도면 대초리 산220-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40,337	100% 이하	군계획시설(유원지) 설치를 통한 토지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
자은2	자은면 유각리 산239 일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13,162	100% 이하	자은면 유각리 일원의 관광자원 및 자연자원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비금3	비금면 죽림리 4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452	100% 이하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
흑산1	흑산면 가거도리 582-10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610	100% 이하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토지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
암태1	암태면 단고리 970-1답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4,801	100% 이하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설치를 통한 토지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
암태3	암태면 단고리 974-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0,485	100% 이하	군계획시설(공공청사·경찰서) 설치를 통한 토지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

2) 용도지역 미지정지 용도지역 부여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도초면1	도초면 아곡리 4-3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70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2	도초면 고란리 21-6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4,94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3	도초면 지남리 산24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15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4	도초면 지남리 산24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292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5	도초면 지남리 산24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7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6	도초면 우이도리 산61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03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7	도초면 우이도리 산61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63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8	도초면 우이도리 산61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7,61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9	도초면 우이도리 산61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1,91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도초면10	도초면 우이도리 산61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34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11	도초면 우이도리 산618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94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12	도초면 우이도리 산61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2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13	도초면 우이도리 산620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66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14	도초면 우이도리 산62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47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15	도초면 우이도리 1170-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08	10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16	도초면 우이도리 1181-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88	10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17	도초면 우이도리 1181-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84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18	도초면 우이도리 산62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73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19	도초면 우이도리 산62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3,453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20	도초면 우이도리 산62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3,96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21	도초면 우이도리 산62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28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22	도초면 우이도리 산62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32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23	도초면 우이도리 산62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562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24	도초면 우이도리 산62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8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초면25	도초면 우이도리 산628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01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1	비금면 고서리 638-2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1,05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2	비금면 고서리 637-31 일원	미지정	생산물리지역	6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 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3	비금면 내월리 산28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8,30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4	비금면 내월리 산27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19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비금면5	비금면 내월리 산28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28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6	비금면 수대리 53-13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10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7	비금면 수대리 638-2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520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8	비금면 죽림리 산204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576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9	비금면 가산리 101-1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8,28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10	비금면 가산리 180-6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4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11	비금면 가산리 180-60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52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12	비금면 광대리 138-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38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13	비금면 광대리 138-1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5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비금면14	비금면 지당리 180-1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3,72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1	신의면 상태서리 808-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820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2	신의면 상태서리 854-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88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3	신의면 상태서리 465-5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2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4	신의면 상태동리 423-1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85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5	신의면 상태동리 382-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42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6	신의면 상태동리 산153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39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7	신의면 상태동리 558-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88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8	신의면 상태동리 6-7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18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9	신의면 상태동리 1-1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76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10	신의면 하태서리 16-10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3,409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신의면11	신의면 하태서리 361-1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64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12	신의면 하태서리 7-3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4,21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13	신의면 하태서리 49-11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3,430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14	신의면 하태서리 62-259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6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15	신의면 하태서리 174-20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160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16	신의면 하태서리 236-53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254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17	신의면 하태서리 246-6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3,30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18	신의면 하태서리 215-3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2,53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19	신의면 하태서리 321-1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38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20	신의면 하태서리 309-28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52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21	신의면 하태동리 172-6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91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22	신의면 고평사도리 259-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85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23	신의면 고평사도리 148-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01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24	신의면 고평사도리 1-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3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신의면25	신의면 고평사도리 1-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2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안좌면1	안좌면 한운리 392-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01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안좌면2	안좌면 읍동리 333-29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5,515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마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안좌면3	안좌면 구대리 981-1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2,97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안좌면4	안좌면 소곡리 709-7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19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안좌면5	안좌면 소곡리 709-8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안좌면6	안좌면 소곡리 598-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91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안좌면7	안좌면 향목리 407-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1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안좌면8	안좌면 박지리 149-4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4,39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안좌면9	안좌면 자리리 302-2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34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1	암태면 당사리 산137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954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2	암태면 신석리 산515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43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3	암태면 당사리 116-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5,310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마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4	암태면 신석리 산516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394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5	암태면 신석리 438-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81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6	암태면 신석리 산292-4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35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7	암태면 신석리 2536-2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2,540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8	암태면 신석리 2571-8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2,156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9	암태면 오상리 750-10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7,484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10	암태면오상리 산199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7,42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11	암태면 수곡리 751-1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1,93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12	암태면 수곡리 751-2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110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13	암태면 수곡리 산276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2,32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14	암태면 수곡리 1383-1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2,77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15	암태면 수곡리 1639-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426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16	암태면 수곡리 산277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2,27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암태면17	암태면 와촌리 2109-2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2,66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18	암태면 와촌리 2109-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8,180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및 라·마등급이 각각 50%이하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19	암태면 와촌리 679-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4,22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20	암태면 와촌리 26-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57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21	암태면 송곡리 13-3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7,484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22	암태면 신석리 981-17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2,22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23	암태면 신석리 182-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67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24	암태면 신석리 139-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738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25	암태면 신석리 16-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84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26	암태면 신석리 1-12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4,75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암태면27	암태면 신석리 1-1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64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1	압해읍 매화리 1816-1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8,88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2	압해읍 매화리 1443-8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0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3	압해읍 고이리 1201-3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3,74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4	압해읍 고이리 산364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38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5	압해읍 고이리 40-17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58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6	압해읍 가룡리 140-9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1,379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및 라·마등급이 각각 50%이하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7	압해읍 가룡리 134-2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23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8	압해읍 가룡리 134-1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8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압해읍9	압해읍 복룡리 178-17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52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10	압해읍 복룡리 155-2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18,498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마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11	압해읍 복룡리 144-27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87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12	압해읍 대천리 120-8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600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13	압해읍 학교리 151-1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2,95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14	압해읍 분매리 19-6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6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15	압해읍 가란리 736-4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300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16	압해읍 분매리 678-9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15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17	압해읍 신장리 824-1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78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18	압해읍 신장리 756-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4,588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마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19	압해읍 장감리 산73-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9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20	압해읍 장감리 529-58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4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21	압해읍 분매리 643-26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4,84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22	압해읍 분매리 643-27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40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23	압해읍 분매리 471-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24	압해읍 분매리 470-7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25	압해읍 분매리 470-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0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26	압해읍 분매리 463-16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2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27	압해읍대천리 산184-8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9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압해읍28	압해읍 대천리 893-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76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29	압해읍 송공리 58-38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0,069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미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30	압해읍 송공리 693-17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976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31	압해읍 송공리 718-5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3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32	압해읍 대천리 793-37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76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33	압해읍 대천리 629-21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47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압해읍34	압해읍 대천리 629-19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53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1	임자면 재원리 산373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56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2	임자면 재원리 산374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46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3	임자면 재원리 107-5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4,29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4	임자면 재원리 107-59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90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5	임자면 광산리 514-5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3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6	임자면 광산리 산17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8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7	임자면 광산리 582-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01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8	임자면 삼두리 산477-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68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9	임자면 삼두리 731-1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3,12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10	임자면 이흑암리 산405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746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11	임자면 이흑암리 1098-30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0,691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니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12	임자면 진리 산71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3,38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임자면13	임자면 진리 309-7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92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14	임자면 대가리 355-36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278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및 라·마등급이 각각 50%이하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생산관리지역	15,989	80% 이하	
임자면15	임자면 도찬리 470-13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13,601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및 라·마등급이 각각 50%이하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16	임자면 도찬리 389-43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3,77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17	임자면 도찬리 213-5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67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18	임자면 도찬리 213-3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임자면19	임자면 도찬리 13-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940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자은면1	자은면 고장리 산272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4,156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및 라·마등급이 각각 50%이하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자은면2	자은면 고장리 1370-7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99,830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및 라·마등급이 각각 50%이하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자은면3	자은면 백산리 605-3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4,99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자은면4	자은면 백산리 605-4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4,294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자은면5	자은면 백산리 605-5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5,196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자은면6	자은면 면전리 248-43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1,97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자은면7	자은면 면전리 264-11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356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자은면8	자은면 유각리 96-3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56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자은면9	자은면 유각리 산140-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28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자은면10	자은면 유천리 184-4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1,15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자은면11	자은면 한운리 산234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244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자은면12	자은면 한운리 산235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26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1	장산면 오음리 67-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01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2	장산면 오음리 51-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9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3	장산면 오음리 2-1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424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4	장산면 오음리 2-3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21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5	장산면 오음리 3-18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2,740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6	장산면 공수리 13-1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48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7	장산면 팽진리 145-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0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8	장산면 팽진리 251-1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846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9	장산면 팽진리 산166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2,04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10	장산면 팽진리 131-8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8,21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11	장산면 팽진리 131-2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22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농림지역	748	80% 이하	
장산면12	장산면 팽진리 116-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528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13	장산면 팽진리 116-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14	장산면 팽진리 510-6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55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15	장산면 팽진리 510-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230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16	장산면 팽진리 592-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7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17	장산면 팽진리 1380-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800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장산면18	장산면 다수리 583-12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5,45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19	장산면 다수리 622-2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39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20	장산면 다수리 596-10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29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21	장산면 다수리 산101-24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4,16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22	장산면 다수리 720-7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906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23	장산면 다수리 720-8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891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24	장산면 다수리 718-21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3,29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25	장산면 다수리 804-3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56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26	장산면 대리 564-8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2,63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장산면27	장산면 마진도리 366-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45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1	지도읍 당촌리 산278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96,50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2	증도면 방축리 984-2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36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3	증도면 방축리 산336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79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4	증도면 방축리 904-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93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5	증도면 방축리 896-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22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6	증도면 방축리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73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7	증도면 증동리 1607-4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6,649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및 라·마등급이 각각 50%이하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8	증도면 증동리 1607-5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75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9	증도면 증동리 1607-6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62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10	증도면 대초리 1600-11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2,45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도면11	증도면 증동리 1940-100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80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12	증도면 대초리 1648-1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7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13	증도면 대초리 1648-1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294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14	증도면 우전리 432-9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67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15	증도면 우전리 산21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100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16	증도면 병풍리 127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786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17	증도면 병풍리 900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2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18	증도면 병풍리 871-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1,150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및 라·마등급이 각각 50%이하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증도면19	증도면 병풍리 79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34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1	지도읍 어의리 52-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00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2	지도읍 어의리 500-7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376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3	지도읍 어의리 산176-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56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4	지도읍 어의리 557-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528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5	지도읍 내양리 59-57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66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6	지도읍 내양리 326-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100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7	지도읍 내양리 606-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99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8	지도읍 내양리 634-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88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9	지도읍 봉리 산0-1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050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10	지도읍 봉리 산400-13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9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11	지도읍 봉리 산400-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70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지도읍12	지도읍 봉리 774-1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68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13	지도읍 봉리 1406-2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749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14	지도읍 봉리 산362-2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1,302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15	지도읍 감정리 1689-12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226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16	지도읍 감정리 1689-1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99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17	지도읍 감정리 1165-10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326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18	지도읍 감정리 658-35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141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19	지도읍 읍내리 857-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4,48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20	지도읍 읍내리 815-9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3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21	지도읍 읍내리 815-1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88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22	지도읍 읍내리 331-1 일원	미지정	자연녹지지역	2,16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23	지도읍 읍내리 331-5 일원	미지정	생산녹지지역	21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24	지도읍 읍내리 2-8 일원	미지정	생산녹지지역	2,90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25	지도읍 광정리 585-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58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26	지도읍 읍내리 781-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8,67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27	지도읍 읍내리 969-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9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28	지도읍 읍내리 570-5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87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29	지도읍 읍내리 산126-1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798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30	지도읍 읍내리 576-6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6,970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미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지도읍31	지도읍 읍내리 576-8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85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32	지도읍 태천리 1396-30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79,124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미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33	지도읍 태천리 153-2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12,297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미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34	지도읍 자동리 414-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73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35	지도읍 당촌리 산279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69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36	지도읍 탄동리 14-7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6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37	지도읍 당촌리 18-18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7,598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및 라·미등급이 각각 50%이하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38	지도읍 탄동리 481-4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2,03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39	지도읍 당촌리 15-2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3,949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40	지도읍 탄동리 482-2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3,799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41	지도읍 선도리 207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33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생산관리지역	1,542	80% 이하	
지도읍42	지도읍 선도리 973-14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8,590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도읍43	지도읍 탄동리 산328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722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팔금면1	팔금면 원산리 1916-1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15,584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가·나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팔금면2	팔금면 원산리 1702-3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8,774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팔금면3	팔금면 원산리 1616-2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3,664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팔금면4	팔금면 대심리 670-5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12,427	8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미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팔금면5	팔금면 장촌리 920-2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6,27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팔금면6	팔금면 당고리 1125-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5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팔금면7	팔금면 당고리 1110-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76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팔금면8	팔금면 당고리 27-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54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팔금면9	팔금면 당고리 317-2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79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팔금면10	팔금면 이목리 656-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4,70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팔금면11	팔금면 읍리 949-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3,94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팔금면12	팔금면 원산리 1234-2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4,021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1	하의면 옥도리 642-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1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2	하의면 옥도리 642-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080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3	하의면 후광리 신80-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179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4	하의면 후광리 539-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95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5	하의면 후광리 신216-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2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6	하의면 후광리 292-38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5,02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7	하의면 후광리 17-3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00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8	하의면 웅곡리 242-38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2,019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마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9	하의면 웅곡리 234-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65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10	하의면 어은리 268-24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971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11	하의면 어은리 268-23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24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12	하의면 어은리 533-173 일원	미지정	농림지역	4,44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하의면13	하의면 어은리 산353 일원	미지정	보전관리지역	81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고, 독립된 섬인 점을 고려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14	하의면 어은리 380-2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359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15	하의면 어은리 366-3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743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16	하의면 어은리 378-1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251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17	하의면 어은리 375-13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3,674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18	하의면 어은리 376-1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76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19	하의면 어은리 121-33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2,707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20	하의면 능산리 산177-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46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21	하의면 능산리 11-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45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보전관리지역	555	80% 이하	
하의면22	하의면 대리 522-57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646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23	하의면 대리 529-46 일원	미지정	생산관리지역	1,995	8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24	하의면 능산리 877-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84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25	하의면 능산리 산41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31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하의면26	하의면 능산리 산41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92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	흑산면 영산리 산17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33,88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2	흑산면 다물도리 산8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68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3	흑산면 다물도리 산8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02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4	흑산면 다물도리 산7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70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5	흑산면 다물도리 산80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39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흑산면6	흑산면 다물도리 산8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4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7	흑산면 다물도리 산78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2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8	흑산면 다물도리 산7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89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9	흑산면 다물도리 산7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79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0	흑산면 다물도리 산7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63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1	흑산면 다물도리 산7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33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2	흑산면 다물도리 산8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72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3	흑산면 다물도리 산8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19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4	흑산면 다물도리 산8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2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5	흑산면 다물도리 산8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35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6	흑산면 다물도리 산88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91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7	흑산면 다물도리 산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8	흑산면 다물도리 산8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473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9	흑산면 다물도리 산90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5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20	흑산면 다물도리 산7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21	흑산면 다물도리 산9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433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22	흑산면 다물도리 산9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6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23	흑산면 다물도리 산9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8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24	흑산면 다물도리 산9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54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25	흑산면 다물도리 25-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35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흑산면26	흑산면 다물도리 산9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0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27	흑산면 다물도리 산8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2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28	흑산면 수리 산8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5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29	흑산면 수리 산8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5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30	흑산면 수리 산8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98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31	흑산면 수리 산88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0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32	흑산면 수리 산90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53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33	흑산면 수리 산8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30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34	흑산면 오리 산110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5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35	흑산면 오리 산11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06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36	흑산면 오리 산11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0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37	흑산면 오리 산11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03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38	흑산면 오리 98-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99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39	흑산면 오리 산11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3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40	흑산면 오리 산11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88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41	흑산면 오리 산11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65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42	흑산면 오리 산11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93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43	흑산면 예리 산29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03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44	흑산면 예리 산29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77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45	흑산면 예리 산29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24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흑산면46	흑산면 예리 173-5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8,326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47	흑산면 예리 산29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32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48	흑산면 진리 30-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45,646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마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49	흑산면 진리 산120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31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50	흑산면 진리 산11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03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51	흑산면 진리 산118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60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52	흑산면 진리 산11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22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53	흑산면 진리 산11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71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54	흑산면 비리 산18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6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55	흑산면 비리 산18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7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56	흑산면 비리 산18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2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57	흑산면 비리 254-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9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58	흑산면 비리 326-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77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59	흑산면 사리 산10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65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60	흑산면 사리 산10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4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61	흑산면 사리 산10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62	흑산면 사리 산10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4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63	흑산면 사리 산10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3,04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64	흑산면 사리 산100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45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65	흑산면 사리 산9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07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흑산면66	흑산면 사리 산98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02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67	흑산면 사리 산9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09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68	흑산면 사리 산9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7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69	흑산면 예리 산29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6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70	흑산면 예리 산29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1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71	흑산면 예리 산185-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2,68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72	흑산면 영산리 18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127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73	흑산면 홍도리 6-3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72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74	흑산면 홍도리 산9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02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75	흑산면 홍도리 산9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76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76	흑산면 홍도리 산15-14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98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치가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 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77	흑산면 홍도리 산98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9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78	흑산면 홍도리 산9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5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79	흑산면 홍도리 산11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80	흑산면 홍도리 산11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81	흑산면 홍도리 산110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82	흑산면 홍도리 산10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83	흑산면 홍도리 산108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8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84	흑산면 홍도리 산10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85	흑산면 홍도리 산10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흑산면86	흑산면 홍도리 산10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87	흑산면 홍도리 산10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33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88	흑산면 홍도리 산10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89	흑산면 홍도리 산10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90	흑산면 홍도리 산10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91	흑산면 홍도리 산100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92	흑산면 홍도리 산11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1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93	흑산면 홍도리 산11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94	흑산면 홍도리 산11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95	흑산면 홍도리 산11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9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96	흑산면 홍도리 산117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97	흑산면 홍도리 산119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12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98	흑산면 홍도리 산118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753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99	흑산면 홍도리 산120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61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00	흑산면 홍도리 산121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64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01	흑산면 홍도리 산122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615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02	흑산면 홍도리 산123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438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03	흑산면 홍도리 산124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50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04	흑산면 홍도리 산125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32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05	흑산면태도리 산63-10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4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 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흑산면106	흑산면태도리 산63-1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656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07	흑산면태도리 산103-8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23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08	흑산면태도리 산113-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96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09	흑산면태도리 산113-1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3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10	흑산면태도리 산302-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51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11	흑산면태도리 산288-2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367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12	흑산면태도리 산244-3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128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13	흑산면 가거도리 582-10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5,416	100% 이하	토지적성평가 라·미등급 50% 초과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14	흑산면 가거도리 582-20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2,472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15	흑산면 가거도리 582-19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385	100% 이하	개별 블록으로 설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흑산면116	흑산면 오리 240-16 일원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896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자연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지구제한 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15	서리	자연취락지구	도초면 우이도리 1438일원	-	7,708	-	
신설	16	진리	자연취락지구	도초면 우이도리 318일원	-	52,008	-	
신설	17	돈목	자연취락지구	도초면 우이도리 842일원	-	22,185	-	
신설	18	성촌	자연취락지구	도초면 우이도리 1193일원	-	7,135	-	
신설	19	화도	자연취락지구	증도면 대초리 1769일원	-	37,314	-	
신설	20	대야	자연취락지구	하의면 능산리 621일원	-	19,298	-	
신설	21	장도	자연취락지구	흑산면 비리 산38일원	-	28,189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지구제한 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22	다물	자연취락지구	흑산면 다물도리 99일원	-	43,637	-	
신설	23	수리	자연취락지구	흑산면 수리 79 일원	-	26,048	-	
신설	24	도목	자연취락지구	흑산면 오리 219일원	-	19,700	-	
신설	25	오리	자연취락지구	흑산면 오리 60일원	-	28,112	-	
신설	26	읍동	자연취락지구	흑산면 진리 652일원	-	35,744	-	
신설	27	사리	자연취락지구	흑산면 사리 284 일원	-	80,482	-	
신설	28	심리	자연취락지구	흑산면 심리 89 일원	-	45,806	-	
신설	29	곤촌	자연취락지구	흑산면 비리 276 일원	-	16,730	-	
신설	30	비리	자연취락지구	흑산면 비리 200 일원	-	23,692	-	
신설	31	마리	자연취락지구	흑산면 비리 79 일원	-	12,360	-	

2) 취락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서리	· 신설 / 면적 : 7,708㎡	·국립공원해제지역 내 당초 밀집마을지구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16	진리	· 신설 / 면적 : 52,007㎡	
17	돈목	· 신설 / 면적 : 22,185㎡	
18	성촌	· 신설 / 면적 : 7,135㎡	
19	화도	· 신설 / 면적 : 37,314㎡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밀집취락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
20	대야	· 신설 / 면적 : 19,298㎡	·국립공원해제지역 내 당초 밀집마을지구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21	장도	· 신설 / 면적 : 28,189㎡	
22	다물	· 신설 / 면적 : 43,637㎡	
23	수리	· 신설 / 면적 : 26,048㎡	
24	도목	· 신설 / 면적 : 19,700㎡	
25	오리	· 신설 / 면적 : 28,112㎡	
26	읍동	· 신설 / 면적 : 35,744㎡	
27	사리	· 신설 / 면적 : 80,482㎡	
28	심리	· 신설 / 면적 : 45,806㎡	
29	곤촌	· 신설 / 면적 : 16,730㎡	
30	비리	· 신설 / 면적 : 23,692㎡	
31	마리	· 신설 / 면적 : 12,360㎡	

나. 방재지구

1) 방재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대광해변	임자면 광산리 산87-19 일원	-	198,299	-	

2) 방재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대광해변	•방재지구 신설 -면적 : 198,299㎡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하여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지정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홀매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압해면 북룡리 산303일원	434,407	감)123,594	310,813	전남고 제2009-438호 (2009.11.1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홀매산 근린공원	•면적변경 : 감)123,594㎡ (434,407㎡→310,813㎡)	•공원내 기 훼손지역 제척 및 공원개설 효율성 저하로 공원축소

2) 유원지

(1)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원지	증도면 대초리 1609-4 일원	-	증) 40,337	40,337	-	

(2) 유원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원지	•신설 •면적 : 40,337㎡	•증도 한반도 해송숲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에 따른 유원지 신설

(3)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조서

①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동수	층수	구성비 (%)	비 고
합계		40,337	-	-	-	-	100.0	
유회 시설	미끄럼틀	220	-	-	-	-	0.5	
	소계	220	-	-	-	-	0.5	
운동 시설	미니축구장	7,082	-	-	-	-	17.6	
	수영장	3,795	-	-	-	-	9.4	
	소계	10,877	-	-	-	-	27.0	
편익 시설	매점	82	82	82	1	1	0.2	
	소계	82	-	-	-	-	0.2	
관리 시설	도로	7,935	-	-	-	-	19.7	
	보행자도로	2,690	-	-	-	-	6.7	
	관리사무소	831	180	180	1	1	2.1	
	주차장	9,545	-	-	-	-	23.7	
	화장실	154	154	154	1	1	0.4	
	소계	21,155	-	-	-	-	52.4	
녹 지		8,003	-	-	-	-	19.8	

②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 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동수	층수	구성비 (%)	비 고
합계			40,337	-	-	-	-	100.0	
1. 유회 시설	1-1	미끄럼틀	220	-	-	-	-	0.5	
	-	소계	220	-	-	-	-	0.5	
2. 운동 시설	2-1	미니축구장	7,082	-	-	-	-	17.6	
	2-2	수영장	3,795	-	-	-	-	9.4	
	-	소계	10,877	-	-	-	-	27.0	
편익 시설	3-1	매점	82	82	82	1	1	0.2	
	-	소계	82	-	-	-	-	0.2	
관리 시설	-	도로	7,935	-	-	-	-	19.7	
	-	보행자도로	2,690	-	-	-	-	6.7	
	4-1	관리사무소	831	180	180	1	1	2.1	
	4-2	주차장	1,191	-	-	-	-	3.0	
	4-3	주차장	3,858	-	-	-	-	9.6	
	4-5	주차장	4,496	-	-	-	-	11.1	
	4-4	화장실	154	154	154	1	1	0.4	
	-	소계	21,155	-	-	-	-	52.4	
녹 지			8,003	-	-	-	-	19.8	

③ 도로 결정조서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총 계			1,421	10,625				
도로	①	9	615	5,584	진입로	대초리 1609-7	대초리 1609-8	
	②	9	271	2,351	진입로	대초리 1609-5	대초리 1609-12	
	소 계		886	7,935				
보행자 도로	보1	6	456	2,589	보행자도로	대초리 1609-7	대초리 1609-11	
	보2	1.3	79	101	보행자도로	대초리 1609-6	대초리 1609-4	
	소 계		535	2,690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신안경찰서	공공청사	암태면 단고리 974-1 일원	-	증 20,485	20,485		

(2)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신안경찰서	•신설 •면적 : 20,485㎡	•신안경찰서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신설

2) 문화시설

(1)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신안군 종합복합타운	문화시설	암태면 단고리 970-1 일원	9,925	증 15,115	25,040	신안고 제2017-49호 (2017.08.24)	

(2) 문화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신안군 종합복합타운	•면적변경 : 증 15,115㎡ (9,925→25,040㎡)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화시설 2단계 조성을 위한 변경

다.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5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	흑산면 가거도리 582-10 일원	-	증)6,577	6,577	-	

(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면적 : 6,577㎡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신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3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등 2건 공포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회의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2건을 공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포사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등 2건 의결에 따른 공포
2. 공 포 일 : 2019. 11. 7.
3. 공포문 및 공포전문 : 다음

공포 목록

규정번호	규 정 명	페이지
제24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3
제24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108회 정례회(2019. 10. 29.)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1.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24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제2호 “「경관법」 제6조”를 “「경관법」 제7조”로 변경하고, 제8호 자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제1항 “제2조의”를 “제2조에 따라”로 변경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외부 및 지붕), 색채, 재료, 대지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별목 등에 대한 경관적 고려사항”을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3호 “옥외 적치물이나 저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계획방향”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4호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전지구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5호 “구조물의 경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그 밖에 경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6호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7호 “옥외광고물, 간판 등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같은항 제8호 “그 밖에 경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 “「경관법」 제14조”를 “「경관법」 제17조”로 변경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경관계획에”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에”로 변경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1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제4항 “지역개발팀장”을 “경관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구분	액 수	
수당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서면심의 및 지문	50,000원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상 제1호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108회 정례회(2019. 10. 31.)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1.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24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

제2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③ 광양만권 내 분양이 극히 어려운 산업단지에 대하여 투자유치 유공자에게 한시적으로 별표3-1에 따른 특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유치 성과급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유치 성과급 지급기준

구분	기 준	
지급대상	·민간인 및 공무원(전남경남도청 파견공무원 개방, 계약직 포함), 기관, 단체	
지급 금액	유치금액	지급비율 및 지급액
	미화 10,000,000\$ 미만 (100억원 미만)	유치금액 × 10/10,000 10,000천원 미만 (미화 \$10,000 미만)
	미화 10,000,000\$ ~ 미화 50,000,000\$ 미만 (500억원 미만)	10,000천원 + {(유치금액 - 100억원) × 8/10,000} 40,000천원 미만 (미화 \$40,000 미만)
	미화 50,000,000\$ ~ 미화 100,000,000\$ 미만 (1,000억원 미만)	40,000천원 + {(유치금액 - 500억원) × 6/10,000} 60,000천원 미만 (미화 \$60,000 미만)
	미화 100,000,000\$ 이상 (1,000억원 이상)	60,000천원 + {(유치금액 - 1,000억원) × 4/10,000} 150,000천원 미만 (미화 \$150,000 미만)

구분	기 준	
차등 적용 기준	상시고용인원	적용률
	100명 미만	30% ~ 50% 미만
	100명 ~ 200명 미만	50% ~ 60% 미만
	200명 ~ 300명 미만	60% ~ 70% 미만
	300명 ~ 400명 미만	70% ~ 80% 미만
	400명 ~ 500명 미만	80% ~ 90% 미만
	500명 이상	90% ~ 100% 미만
기타	·유치금액은 당해연도 투자 금액(다만 연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으로 함. ·미화금액의 원화금액 환산은 성과급 지급시기의 환율 적용 계산	

[별표 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 성과급 지급기준

구분	기 준	
지급 대상	대상자	· 민간인
	실적 범위	·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및 하동 대송산업단지 분양 실적
지급금액		· 분양대금의 1% 이내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1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해룡산업단지(2단계) 실시계획(변경)승인 정정 고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10호(2018.06.07.) 해룡산업단지(2단계)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의 산업시설용지 2구역 허용용도 “발전시설” 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 11.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정정사유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산업시설용지 2구역 허용용도에 “발전시설” 이 누락되어 반영 정정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2.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없음)
5.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정정)

■ 기 정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	2 구역	A	A3 (1-1 ~8-2) A10(1~8)	용도	허용 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17-13)에 의거 허용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에 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및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2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함) -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정 정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	2 구역	A	A3 (1-1 ~8-2) A10(1-8)	용도	허용 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17-13)에 의거 허용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에 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및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2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함) -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에 한함) - 발전시설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6.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변경없음)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변경없음)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변경없음)
9.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변경없음)
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변경없음)
12. 위치도(변경없음)
1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변경없음)
1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15.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없음)
16. 외국인투자 유치계획(변경없음)
17.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8.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9.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변경없음)
20.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21. 공공시설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등에 관한 조서(변경없음)
22.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변경없음)
23.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